

2013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비영리법인의
설립 · 해산 및 관리 · 운영에
관한 실무적 연구

송 호 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 차

제1편 연구의 개관	3
제1장 연구의 목적	4
제1절 연구의 배경	4
제2절 연구의 목적	5
I. 연구의 필요성	5
II. 연구의 목적	5
제2장 연구의 내용과 방법	6
제1절 연구의 주요내용과 범위	6
제2절 연구의 방법	7
제2편 실무적 연구	8
제1장 법인일반	9
제1절 법인제도의 개관	9
I. 법인의 의의	9
II. 법인제도의 필요성	10
제2절 법인의 종류	11
I.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11
II. 영리성에 의한 분류: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12
III. 설립근거에 의한 분류: 상법법인, 민법법인, 공익법인, 특수법인	14

제3절 비영리법인과 구분되는 단체	18
I.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특성	18
1. 비영리법인의 개념	18
2. 비영리법인의 특징	18
II. 구분되는 단체	18
1.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	18
2.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	19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19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20
5. 개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21
6. 기타 유사개념	21
가. 공공법인	21
나.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21
다. 사회단체	21
 제2장 법인의 설립과 해산 등	 23
제1절 법인의 설립	23
I.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	23
1. 법인설립절차	23
가. 설립절차 개관	23
나. 목적의 비영리성	24
다. 설립행위(정관작성 등)	25
(1) 사단법인 설립의 경우	25
(가) 의의	25
(나) 정관의 기재사항	26
(2) 재단법인설립의 경우	27
라. 기관의 구성	30
(1) 개설	30
(2) 이사	30
(3) 이사회	31
(4) 사원총회	31
(5) 감사	31
마. 설립허가	31
(1) 설립허가실무	31

(가) 설립허가의 의미	31
(나) 주무관청의 허가권한	32
(다) 관련 구비서류	33
(2) 법인설립이후의 절차	34
바. 법인설립등기	35
(1) 개설	35
(2) 등기사항	36
2. 설립허가상의 실무	37
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업무	37
나. 관련구비서류	40
다. 설립허가시 검토사항	42
(1) 재량에 의한 판단사항	42
(가) 법인설립의 필요성	43
(나)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43
(다)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43
(라)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43
(2) 정관 검토사항	44
(3) 구비서류의 누락여부 검토	45
라.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	45
II. 공익법인의 설립	47
1. 공익법인의 설립요건	47
가. 재산의 출연	47
나. 정관의 작성	47
다. 주무관청의 허가	48
라. 임원의 구성	48
마. 설립등기	49
2. 설립허가상의 특수문제	49
제2절 법인설립 후 조치사항	52
I.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52
II. 법인설립등기 보고 (등기사항의 보고 ?)	53
III. 재산이전 등 이행결과보고	53
IV. 장부 및 서류의 비치 (민법: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의 비치)	54
제3절 법인의 해산 및 청산	57

I.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해산	57
1. 법인해산사유	57
가. 법인공통해산사유	57
나.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63
나. 취소절차와 효력	63
다. 구제절차	65
2. 해산절차	65
가. 해산등기	65
나. 해산신고	66
다. 해산에 따른 효과	66
3. 청산	67
가. 청산의 의의	67
나. 청산법인의 기관	67
(1) 청산인	67
(2) 그 밖의 기관	69
다. 청산사무	69
(1) 해산등기와 해산신고	69
(2) 현존사무의 종결	70
(3)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70
(4) 잔여재산의 인도	70
(5) 파산신청(민법 제93조)	71
(6)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71
4. 해산·청산의 검사와 감독	71
II. 공익법인의 해산	71
1. 공익법인의 해산사유	71
2. 공익법인해산의 특수문제	72
제4절 법인의 등기	73
I. 법인등기의 의미	73
II. 법인등기의 양태	73
1. 설립등기	73
2. 변경등기	74
3. 분사무소 설치등기	74
4. 사무소 이전등기	74
5. 해산등기	75

6. 요약	75
Ⅲ. 등기강제의 수단	75
제3장 법인의 관리와 운영	77
제1절 법인의 기관구성 및 운영	77
I. 민법상 법인	77
1. 이사	77
가. 이사의 임명과 해임	77
나. 이사의 직무권한	78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78
(2) 법인의 대표권	78
(3) 법인의 업무집행권	80
다. 임원의 운영	80
(1) 임원의 선임보고	80
(2) 임원의 임기	80
(3) 임기의 개시	81
2. 감사	81
3. 이사회	82
4. 사원총회	82
가. 총회의 위상	82
나. 총회의 구분 및 소집	83
(1) 통상총회(정기총회)	83
(2) 임시총회	83
(3) 소집절차	84
5. 분사무소(지부)	84
II. 공익법인	85
제2절 정관의 변경	87
I. 민법상 법인의 정관변경	87
1. 정관변경의 의미	87
2. 정관변경의 요건	87
가. 사단법인의 경우	87
나. 재단법인의 경우	87
3. 정관변경의 실무	89

가. 정관변경 대상 및 효력	89
나. 구비서류	89
다. 검토사항	90
라. 변경허가 및 변경 후 조치사항	91
II. 공익법인의 특수문제	92
제3절 기본재산의 처분	93
I. 민법상 법인의 기본재산처분	93
1. 기본재산처분의 의미	93
2. 주무관청의 실무	93
가. 기본재산 처분 등에 따른 정관변경 대상	93
나. 구비서류	94
다. 검토사항	95
라. 허가내용	96
II. 공익법인의 특수문제	97
제4절 업무보고 등	99
I. 민법상 법인의 업무보고 등	99
1.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99
2. 법인서류 및 장부의 배치	99
3.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99
II. 공익법인의 특수문제	100
1. 공익법인의 회계	100
2. 공익법인의 감사	100
제4장 법인의 회계와 세무	101
제1절 법인의 회계	101
I. 법인의 회계	101
1. 회계의 구분 (공익령 제23조)	101
2. 서류의 관리	101
II. 예산 및 결산	102
1. 사업계획 및 예산	102

2. 사업실적 및 결산	102
제2절 법인의 세무	105
I. 재산의 출연	105
1. 출연재산의 의의	105
2. 출연시기	105
3. 출연시한	106
4. 출연재산의 평가	106
II.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	107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인세법 29조)	107
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법인	107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108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110
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및 이자상당액	111
마. 중복적용의 배제	112
바. 명세서의 제출의무	112
2.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상증법 16조 48조)	112
가. 공익사업의 종류	112
나.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비율의 제한	113
다.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116
라. 보고의무	118
 제3편 법인관련 실무자료	120
제1장 업무서식	121
제2장 주요판례	130
제3장 주요 민원사례	132
 부록:	133

민법, 공익법인법·시행령, 법무부법인규칙 4단 비교134

비영리법인의
설립·해산 및 관리·운영에
관한 실무적 연구

제1편 연구의 개관

제1장 연구의 목적

제2장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1편 연구의 개관

제1장 연구의 목적

제1절 연구의 배경

□ 현대사회는 분자화되고 고립된 인간상을 특징으로 하면서도, 일반 국민들은 종래의 전통적·인습적인 단체중심의 문화에서 탈피하여 자신의 관심과 이익에 맞춰진 다양한 단체의 결성을 원하는 것이 일반국민들의 욕구임.

□ 또한 오늘날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편으로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작은 정부”를 요구하면서도 복지정책의 확대나 환경정책의 강화 등 “큰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요구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상황임. 따라서 정부의 비효율을 벗어나면서도 민간부분의 시장중심적 효율성에서 탈피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제3섹터(비영리단체 부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현재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규율하는 일반법은 민법임. 민법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중심으로 법인의 설립, 기관 및 해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중에서도 특히 ‘공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관해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에 상세한 규정을 두어 이를 규율하고 있음.

□ 그런데 민법 및 공익법인법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공익법인을 비롯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해산·관리·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한 전반적인 법리의 정리나 실무상의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드문 형편임.

제2절 연구의 목적

I. 연구의 필요성

□ 법인제도에 대한 국민적 수요증가 및 제3섹터의 역할 증대

- 국민들의 다양한 단체형성의 자유에 대한 수요의 증대와 함께 오늘날 증가 일로에 있는 제3섹터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을 규율하는 법제를 중심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비영리법인의 설립·해산 및 관리·운영 등의 제반 법적 문제를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할 필요가 있음.

□ 비영리법인의 운용에 관한 실무적 지침의 필요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용에 관한 근거법률은 민법이지만,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특히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게 됨. 그렇지만 모든 법인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민법에서는 실무적인 운용상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에 적용될 수 있는 충분한 규범적 자족성이 완비되지 못함.

- 또한 공익법인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지만, 민법과 공익법인이 서로 중복되거나 반대로 서로 규범상 결여되어 있는 규정들로 인해 실무상 많은 어려움이 등장하는 현실임.

-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 잡기 위해 민법 및 공익법인법을 중심으로 한 법리적 설명을 기반으로 한 실무적 해결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

II. 연구의 목적

□ 이러한 연구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익법인을 비롯한 비영리법인이 겪게 되는 제반 법적 문제점들, 즉 법인의 설립·해산·관리·운영·회계 및 감독상의 여러 법적 문제점들에 대해 종래의 기본적인 법리를 토대로 실무상에서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운용지침을 마련함에 주된 목적이 있음.

□ 또한 본 연구가 향후 민법 및 공익법인법 등 기타 관계법령상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해석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에 부가적인 목적이 있음.

제2장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1절 연구의 주요내용과 범위

□ 민법 및 공익법인법상 법인제도에 관한 법리의 정리

- 민법상 법인제도에 관한 법리의 전반적인 정리
- 공익법인법상 법인제도의 법적 특수성 정리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운용에 관한 실무적 검토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해산에 관한 실무에서의 운용상황 점검
- 비영리법인의 관리·운영 및 감독상에 관한 실무적 문제점 검토
- 공익법인의 회계 및 세무문제의 실무적 검토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운용과 관련한 판례 및 예규의 검토

-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을 비롯한 운용 전반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분석
-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운용 및 감독에 관한 관련 예규의 검토

□ 법인 운용상의 민원질의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 제시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설립·해산 등 운용전반에 걸친 민원질의에 대한 법리적·실무적 문제점 분석
- 상기한 민원질의에 대한 해석론적·입법론적 해결방안의 제시

제2절 연구의 방법

□ 관계법령의 법리적 분석

-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법인에 대해 적용되는 여러 관련법률들의 조문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민법을 기본으로 하여 공익법인법 등 민법규정을 준용하는 다른 특별법상 규정과의 법리적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분석함.

□ 법인운용 실무의 분석

-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 기타 운용 전반에 걸쳐 주무관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의 실무상황을 분석하여 이를 연구에 반영함.

- 특히 민법이나 공익법인법 기타 관련법률에서 명확히 규정된 조항의 부재로 인하여 겪게 되는 실무상의 현실을 반영하여 이에 관한 개선점을 모색함.

□ 기타 방법론

- 보다 내실있는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론도 활용할 계획임.

- 전문가초청 의견의 조회
- 관련업무종사자들을 방문하여 실무상황을 면담·청취

제2편 실무적 연구

제1장 법인일반

제2장 법인의 설립과 해산 등

제3장 법인의 관리와 운영

제4장 법인의 세무

제2편 실무적 연구

제1장 법인일반

제1절 법인제도의 개관

I. 법인의 의의

□ 법인(法人)이라 함은 자연인(自然人)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해 인격이 부여되어(法人格)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 단체(社團法人) 또는 재산(財團法人)을 말하며, 법에 의하여 창출 및 의인화(擬人化)한 점에서 자연인(自然人)에 대비하여 이를 법인(法人)이라 부른다.

□ 민법은 법인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 법인은 자연인이 생존기간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과는 달리 법률의 규정과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되며(민법 제31조 및 제33조), 청산등기를 마침으로써 소멸된다. (민법 제94조)

□ 법인격(권리능력, 권리의무의 주체)을 가지려면, 자연인의 경우 생존(生存), 사단법인의 경우 구성원(構成員), 재단법인의 경우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財産)을 그 필수적인 본질로 한다.

□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적 주체를 말함

- 현행 민법은 법인에 대하여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능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법인의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정관이나 약정에 의해 회피될 수 없음

- 법인은 자연인이 생존기간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과는 달리 법률의 규정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되며(민법 제31조, 제33조) 청산등기를 마침으로써 종료됨

II. 법인제도의 필요성

□ 법률관계의 단순화

- 법인의 설립에 의하여 구성원과는 별개로 단체 자신에 법인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률관계를 단순화시킬 수 있음.

☞ 예컨대, 1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가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물을 임대하려고 할 때, 만약 자연인에게만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면 100명의 회원 전원이 임대계약의 당사자로 나서야 하고 상대방과의 분쟁 시에는 전체회원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할 것임. 또한 건물을 매수할 경우에도 전체회원의 명의로 등기해야 할 것이며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전체회원의 명의로 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음. 이러한 경우에 법은 권리능력없는 단체에도 제한된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법인으로 되었을 때 자연인과 같은 완전한 권리능력이 인정됨.

-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이 되면, 단체자체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에서 원·피고가 될 수 있으며 단체명의의 부동산등기나 계좌개설 등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법률관계가 단순화하게 됨.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법인으로 인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명확하므로 원활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법인재산과 구성원 재산의 구별

- 법인의 설립에 의해 단체에 귀속하는 재산과 구성원 개인에 귀속하는 재산이 구별됨. 만약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단체의 영역과 구성원 개인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단체의 공동목적에 위해서 부담하게 된 채

무에 대해서도 단체의 구성원은 자신의 재산으로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그러나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으로 인정되면, 법인의 법인격과 구성원의 법인격은 구별되고 이에 따라 법인의 재산과 구성원 개인의 재산은 엄격히 분리됨.

제2절 법인의 종류

I.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회원(사원)이 중심인지,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인지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분류됨

□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과 조직 아래에 결합한 사람의 단체로서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법인
-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법인
- 설립자(출연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구속된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사단법인	재단법인
○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에 대해 법인	○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모은 재산이나 출연한 재산을 개

<p>격을 부여한 것으로 재산을 본체로 하는 재단법인과 다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이기 때문에 구성요소인 사원이 필요하며 최고 의사결정도 사원총회의 자주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짐 - 이러한 사단법인은 통상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되지만, 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절차가 없이 법이 정한 설립요건을 갖춰 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되기도 함 	<p>인의 권리에 귀속시키지 않고 별개의 실체로 운영하기 위해 재산을 구성요소로 성립된 법인격체를 말하며, 이런 점에서 사단법인과 차이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재단법인은 재산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취지에서 설립 목적을 비롯한 정관변경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음(민법 제46조) - 다만, 재산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으므로 법인을 대표하여 이사가 법률행위를 하지만 인적 단체가 아니므로 사단법인과 같은 사원총회(또는 주주총회)가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의 설립도 허용되지 않음(민법 제39조제1항)
---	---

II. 영리성에 의한 분류: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영리법인

- 근거 : 민법 제39조, 상법
-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설립되어,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사원,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등을 의미하여 소위 회사원이라 칭하는 직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 영리법인은 100% 모두 사단법인체로 모두 상법상(商法上)의 회사(會社)인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등이 해당되고, 구성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 법인이 될 수 없다.

■ 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과 달리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며 그 과실을 구성원이나 사원 개개인에게 배분하는 것

을 기본원리로 함

■ 영리법인은 모두 사단법인체로 상법상의 회사인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등이 해당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의 설립은 허용되지 않음(민법 제39조)

□ 비영리법인

- 근거 : 민법 제32조, 공익법, 기타 개별법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익사업, 공익을 저해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을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익사업, 공익을 저해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다만,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면 족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비영리법인의 특징

1. 의도적·계획적인 이윤추구를 하지 아니한다.
2.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없다.
3. 비영리사업에 대한 원가회수의 의사가 없이 일방적인 소비·지출을 한다.
4. 공공성·사회성을 조직의 기조로 한다.
5. 출연 받은 재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상속세·증여세가 면제된다.
6.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Ⅲ. 설립근거에 의한 분류: 상법법인, 민법법인, 공익법인, 특수법인

□ 상법법인

- 근거 : 상법
-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 민법법인

- 근거 : 민법 제32조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통상 “비영리법인”이라고 칭한다.
- 법인의 목적 및 사업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등(주무관청)이 정하는 바(예컨대 법무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감사원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여 설립허가와 감독이 이루어진다.
- 민법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의미하며, 통상 ‘비영리법인’으로 통칭되는 시민운동단체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됨
 - 이러한 민법법인은 민법과 각 부처의 규칙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허가와 감독이 이루어짐

□ 공익법인

- 근거 : 공익법 제4조
- 「사회일반의 이익(불특정다수인의 이익, 즉 公益)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법인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법인이 공익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은 아니며, 상증법은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라 하여 더 넓은 의미의 공익법인 개념을 사

1) 법무부는 ‘법무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용하고 있다.)

- 광의로 보면 공익법 제4조에 의하여 설립허가 되는 공익법인 전체가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된다.

-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 공익법 제4조에 의하여 설립허가 되는 공익법인은 공익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해산에 관한 규정 등 공익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공익법 제1조 참조)

- 통상 공익(公益)법인이라고 하면 광의의 비영리(非營利)법인으로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총칭하지만, 여기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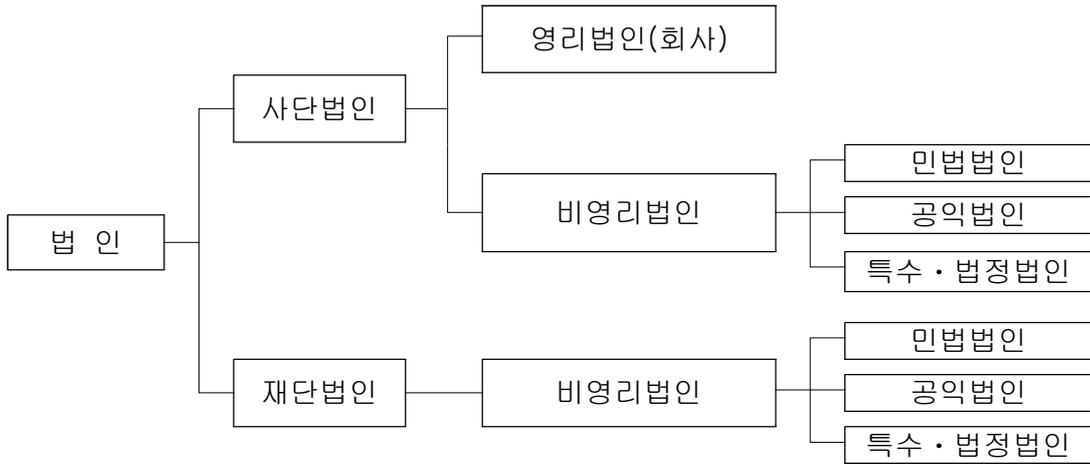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공익법인’을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음

□ 특수법인

- 근거 :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등 각종 개별법
-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각종 조합 및 연합회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비영리법인 중에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각종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통칭하며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이 해당됨

<법인의 분류>2)



<법인의 종류>

분류기준			비고	
영리성 여부	근거법	성격		
영리법인	상법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회사)	- 모두 사단법인(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 재단법인은 구성원이 없으므로 이윤이 귀속될 자가 없어 본질적으로 영리법인이 될 수 없음	
	민법	공익목적 아닌 법인 (실무상 「비영리법인」)	-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법인자체의 목적을 추구	
		공익목적이나 공익법 미적용 법인 (실무상 「비영리법인」)	- 공익을 목적으로 하나 공익법이 적용되지 않는 법인존재 이유는 공익법의 적용범위가 열거규정이기 때문	대부분 상증법상 「공익법인」으로 인정

2) 이 도표는 편람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것으로 비영리법인의 구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민법 및 공익법	공익법인법 적용법인 (법률상, 실무상 「공익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 장학, 자선 법인 - 공익법이 보완적으로 적용 되나 광의로는 「민법법인」에 속함
특수법인 (특별법)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허가 되는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 의료법인 (의료법) - 기타 (각 근거법)
	특별법으로 국가등이 직접 설립하는 법인 (좁은 의미의 「특수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한국은행법) 등 - 국가의 특별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설립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제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1. 공익활동을 하는 공식단체의 형태를 갖춘 조직을 법인여부에 관계없이 등록 받아 지원하는 제도
2. 등록관청 및 지원주체
 - 주무부장관 :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 운영하는 단체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단체의 등록이 교육청에 위임됨
 - 시도지사 : 당해시도에만 사무소를 설치 · 운영하는 단체 (당해시도에서 지원)
3. 등록단체에 대한 지원
 - 행정적 지원, 심사에 의한 보조금 지원, 조세감면, 우편요금 감액

제3절 비영리법인과 구분되는 단체

I.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특성

1. 비영리법인의 개념

□ 실정법에서 영리(營利)법인과 비영리(非營利)법인을 구분하는 이유는 법인의 목적이 영리에 있는가 비영리에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음

-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법인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각종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통칭함

2. 비영리법인의 특징

□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법인이나 구성원을 위해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며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없음

- 따라서, 영리법인과 달리 원가회수를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은 일방적인 소비활동을 하게 되며 공공성과 사회성을 조직활동의 기본으로 삼음

II. 구분되는 단체

1.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 등 공익사업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을 허가 받아야 함

2.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

□ 법인세법 제1조는 비영리법인을 내국법인(內國法人)과 외국법인(外國法人)으로 구분하면서 비영리내국법인을 아래와 같이 민법에 의한 법인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 다만, 법인세법의 경우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도 비영리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비영리 내국법인>

*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란 민법에 규정된 ‘비영리법인’과는 개념상 큰 차이가 있으며, 법인 여부에 불문하고 적극적인 공익활동을 수행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는 ‘공익법인등’ 을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 과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음

-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적극적으로 공익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로 족한 비영리법인과는 차이가 있음

<공익법인등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5. 개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 이외에도 각종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될 수 있음

- 이렇게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연합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등과

-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등 다양한 종류와 형태가 있음

6. 기타 유사개념

가. 공공법인

□ 정부조직법상에 근거하지 않고 각각의 지원법 또는 육성법 등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활동내용에 공익성이 강한 정부투자기관, 공단, 기금, 사업단, 감독원, 정부투자기관이나 공사,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 여기에 해당

나.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 인적 단체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주무관청의 법인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민법이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설립자가 행정관청의 지도나 감독 등 법적 규제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지 못한 경우도 있음

다. 사회단체

□ 사회단체는 과거 ‘사회단체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단체중에서 법령에 의해 허가·인가·등록되지 않은 구호단체, 학술단체, 종교단체 및 근로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1997.3.7. 동 법률의 폐지로 사문화 됨. 다만, 사회단체라는 말이 그 동안 비영리성 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넓게 사용된 관계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법령에서 사용된 사례³⁾를 볼 수 있음.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은 기부금품을 정의하면서 법인, 정당, 종친회, 친목단체와 더불어 ‘사회단체’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제2장 법인의 설립과 해산 등

제1절 법인의 설립

I.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

1. 법인설립절차

가. 설립절차 개관

□ 민법 제31조는 “법인의 성립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라고 하여 법률의 규정에 벗어난 법인의 설립을 인정하지 않으며, 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법률이 인정하는 법정의 요건을 구비할 것을 요구함

□ 법인의 설립절차는 크게 받기인 또는 설립자에 의한 「단체의 설립단계」와 그 설립된 단체에 국가기관의 행정행위에 의한 「법인격부여단계」로 구분됨.

- 이때 설립되는 법인의 종류는 현행 민법상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 중의 하나이어야 함.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비영리” 목적의 사업을 추구하는 것을 전제로 함.

□ 「단체의 설립단계」에서는 설립받기인들에 의한 ① 정관의 작성 및 ② 기관의 구성으로 이루어짐. 기관의 구성은 대개 정관작성시에 함께 이루어지게 되므로, 특히 ①을 강학상 “설립행위” 라고 함. 다만 여기서는 실무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관작성과 기관구성을 나누어서 설명함.

- 특히 유의할 점은,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행위에 있어서 재산의 출연이 반드시 필요함.

- 그 외 현행민법에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실무적으로는 사단법인의 경우 정관작성과 기관구성을 확인하는 사원총회(즉 창립총회)의 결의가 요구됨.

□ 「법인격부여단계」에서는 ③ 주무관청의 허가와 ④ 법인설립등기가 이루어짐.

어짐으로써 법인설립이 완성됨. 즉 단체(사단 혹은 재단)가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 처분을 내리게 되면, 이후 단체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설립이 완성됨(민법 제31조 및 제32조).

□ 이하에서 설립절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나. 목적의 비영리성

□ 어떤 단체(즉 사단 또는 재단)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學術, 宗教, 慈善, 技藝, 社交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영리아닌 사업”이란 법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반드시 公益(즉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도 없음.⁴⁾

□ 만약 구성원에게 이익분배가 있게 되면 그것은 영리목적의 법인이 되어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됨(민법 제39조). 따라서 구조적으로 이익을 분배할 구성원이 없는 재단에 있어서는 언제나 비영리재단법인만 인정되고, 사단법인의 경우는 이익분배유무에 따라 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나누어지게 됨. 민법을 설립근거법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영리의 목적을 추구하여야 함.

□ 어떤 단체의 성격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에 대한 판단은 우선 법인설립당시 허가를 맡은 주무관청이 하여야 하는데, 주무관청은 설립허가신청시에 단체가 제출한 정관에 나타난 단체의 설립목적, 단체의 사업내용, 사원의 자격, 출자방법이나 자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구성원의 이익분배가능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법인의 영리성을 판단하여야 함.

4) 비영리법인 중 일정한 공익적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975년 법률 제2814호)의 적용을 받게 됨.

☞ 만약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추후 실제 활동에 있어서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으로 판명되면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민법 제38조 참조).

□ 그러나 비록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것이 현재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임.

☞ 예컨대 비영리사단법인인 학술단체가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간행된 잡지를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은 가능함.

□ 그렇지만 그러한 영리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 수익은 법인의 사업목적에 충당되어야 하고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다. 설립행위(정관작성 등)

□ 사단법인에 있어서 설립행위는 곧 법인의 「정관의 작성」을 일컫는 것이지만, 재단법인에 있어서 설립행위란 법인의 「정관의 작성」과 함께 「재산의 출연」을 의미함.

(1) 사단법인 설립의 경우

(가) 의의

-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란 설립자(발기인)가 장차 성립될 사단법인의 근본규칙인 정관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함.

- 민법은 설립자가 정관을 서면에 작성하여 기명날인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민법 제40조), 설립행위를 일종의 요식행위로 하고 있음. 따라서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정관은 효력이 없음.

- 설립자의 수에 대해서는 민법에 언급이 없음. 따라서 사단의 성질상 2인 이상이면 족하다고 해석됨.

(나) 정관의 기재사항

- 정관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렇지 않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성됨.

□ 필요적 기재사항

- 아래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만 하고(민법 제40조), 그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의 효력은 생기지 않고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의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됨.

- 목적 :

- 목적은 영리아닌 사업이어야 함

- 명칭 :

- 명칭사용에 특별한 제한은 없고, 「사단법인」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아도 무방함.
- 다만 실무적으로 기존 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 사무소의 소재지 :

- 사무소가 수개일 때에는 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하여야 함.
- 실무적으로 도로명과 건물번호, 건물명, 호수까지 모두 기재함.

- 자산에 관한 규정 :

- 민법에는 어느 정도까지 자산에 관한 규정을 표시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주무관청 및 일반의 제3자에게 비영리법인의 견실한 재정적 기초를 알리는 데 필요한 정도라고 이해됨.

■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자산의 종류·구성·관리·운용방법·각 사원의 출자액·출자의무(회비)에 관한 것이 그 기재사항이 됨.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 이사의 임면방법에 관한 규정, 즉 이사의 수, 자격, 임기, 선임과 해임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여기에 해당됨.

■ 민법에는 이사선임방법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이사는 반드시 사원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지 않아도 되고, 사원이 아닌 자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도 무방함.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 사원의 자격, 입사, 퇴사, 제명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함.

☞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절대로 퇴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퇴사의 조건으로 부당한 위약금을 정하는 것과 같은 정관규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규정으로 무효임.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히 이를 정하고 있는 때에만 기재하면 된다.

□ 임의적 기재사항

- 정관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말함. 임의적 기재사항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도 일단 정관에 기재되면 필요적 기재사항과 마찬가지로 효력을 가지게 됨으로, 이를 변경하려면 정관변경의 절차(즉 주무관청의 허가와 정관변경등기)에 의해서만 가능함.

(2) 재단법인설립의 경우

-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야 함. 즉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란 사단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관의 작성행위가 필요하지만, 그 외에도 법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의 출연행위가 요구됨.

- 재단법인의 정관기재사항 중 필요적 기재사항은 위의 사단법인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서 2가지가 빠짐. 즉 재단법인에는 사단법인과 달리 사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내용이 되지 못하며,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도 민법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지 않음. 이들 기재사항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의 정관작성과 동일함. 따라서 재단법인에서의 정관작성은 설립자가 이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요식행위임.

- 재단법인의 설립은 생전처분으로 할 수 있고 유언으로도 할 수 있음.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이 그리고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민법 제47조).

대법원 1999.7.9.선고, 98다9045 판결

【 판시사항 】

[1]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를 한 경우,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이 기본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1] 민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 준용되는 민법 제555조는“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의 해제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해제는 민법총칙상의 취소와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서면에 의한 출연이더라도 민법 총칙규정에 따라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행위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 제48조에 의하여 법인 성립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도 위 양당사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를 한 경우에는 출연자는 재단법인의 성립여부나 출연된 재산의 기본재산인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 판시사항 】

- 가. 출연재산의 재단법인에의 귀속과 등기
- 나.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의 경우 출연재산의 귀속과 등기

【 판결요지 】

가.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이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의 위 조항에 의하여 법인 성립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도 위 양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요건(법인의 성립)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나.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는 그 법인에의 귀속에는 법인의 설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재단법인이 그와 같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유언장이 상속인의 한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라. 기관의 구성

(1) 개설

- 법인이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의거하여 외부에 대하여 행동하며, 내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직이 필요한데, 이 조직을 이루는 것이 법인의 「기관」임. 여기에는 의사결정기관, 의사집행기관, 감독기관 등이 있음

- 기관에는 법률상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요기관과 둘 수도 있는 임의기관으로 나뉨. 대표기관이자 집행기관인 「이사」는 모든 법인이 두어야 하는 필요기관이지만, 이사의 감독기관인 「감사」는 민법상 법인에는 임의기관이지만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에는 필요기관임.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게는 필요기관이지만, 재단법인에는 존재하지 않음.

- 여기서는 법인설립을 위한 기관구성에 관해서만 기술하고, 기관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3장 제1절 「법인의 임원 및 운영」을 참고.

(2) 이사

-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대표기관),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업무집행기관), 상설적인 필요기관임.

-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에는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함(민법 제57조).

-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음.

- 이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인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통설임. 그러나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음(형법 제43조·제44조).

- 이사의 임면방법에 대해서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임.

-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며(민법 제49조 제2항),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해임·퇴임을 가지고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민법 제54조 제1항).

(3) 이사회

- 이사가 수인있는 경우 이사들로 구성된 회의체인 이사회를 둘 수 있음.
그러나 현행 민법은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사회는 필요기관이 아니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임의기관임.

(4) 사원총회

- 사단법인에는 사단법인을 구성하는 사원의 전원으로써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를 반드시 두어야 함(즉 필요기관).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없음.

- 사단법인은 정관의 변경·법인의 해산 등을 비롯한 사단법인에 관한 모든 근본적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면서 필요기관이므로,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도 이를 폐지하지 못함.

(5) 감사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음(민법 제66조). 즉 현행 민법상 감사는 필요기관이 아닌 임의기관임.

- 이사와는 달리, 감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님.

마. 설립허가

(1) 설립허가실무

(가) 설립허가의 의미

-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사단 또는 재단)가 법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민법 제32조). 따라서 사단이나 재단이 법인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법인으로 성립되지 못함.

(나) 주무관청의 허가권한

- 주무관청이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함. 어떤 단체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고자할 때 어느 관청에다가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가는 법인정관에 기재된 목적에 따라 판단됨.

■ 예컨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시·도교육청장, 자선·보건·위생사업이 목적인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 종교·예술·문화사업 등의 목적이라면 문화관광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됨.

※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소관사항인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으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중 하나의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음. 예컨대 학술진흥과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할 때 교육부장관과 문화관광부장관 중에서 어디가 주무관청인지가 문제됨

⇒ 민법에는 이에 관한 해당규정이 없으며, 현재 이에 관한 판례도 없는 상태임. 학계에서는 해당 행정관청이 모두 주무관청이므로 해당 행정관청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는 복수설과 그 중의 어느 한 관청으로부터 허가로 족하다는 단수설이 대립하고 있음.

-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뿐만 아니라 사후감독도 하게 되는데, 만약 복수의 행정관청으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아야지만 법인설립이 인정되고 사후에도 복수의 관련 행정관청으로부터 사후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복수의 사업목적이 있을 때 그 사업목적의 주종을 따져서, 주된 사업 목적을 관장하는 행정관청을 주무관청이라고 보아야 하며, 종된 사업목적 관장하는 주무관청에 설립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그 관청은 주된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관청으로 이관하든지 아니면 허가신청을 반려하여야 할 것임.

- 만약 동등한 값어치의 복수 사업목적일 때에는 어느 한 관청이 설립허가처분을 내린 경우에 그 관청이 사후에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관청의 설립허가로 법인설립에서 요구되는 허가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따라서 비록 법인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임(大判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등).

(다) 관련 구비서류

법 인 별 구 비 서 류		근거법령	비영리법인 (민법)		공익법인 (공익법)		비고
			사단	재단	사단	재단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비영리법인용, 공익법인용 구분)	교육규칙 별지1호	○	○	○	○	공통
2	설립취지서 (임의서식으로 작성)	공익령4 ①-2	△	△	○	○	공통
3	설립발기인(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자)의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교육규칙 31 공익령4 ①-1	○	○	○	○	공통
4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등을 이력서 형식으로 기재)	교육규칙 35 공익령7 ①-2	○	○	○	○	공통
5	임원취임승락서 (필요시 겸직동의서)	교육규칙 35 공익령7 ①-4	○	○	○	○	공통
6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 사후 발견시 임원취임 취소)	공익령7 ①-7	X	X	○	○	공익 법인
7	창립 총회 회의록 (회의록 내용상의 별첨서류 첨부·간인)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교육규칙 36 공익령4 ①-8	○	X	○	X	사단 법인
9	정관 (정관준칙 준수, 설립발기인(재단법인의 경우	교육규칙 32	○	○	○	○	공통

	출연자)이 기명날인)	공익령4 ①-3 민법40, 민법43					
10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공익령1 4	△	△	○	○	공통
11	재산출연증서(기부신청서) ※ 인감증명서, 출연재산의 소유증명서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첨부	교육규칙 33 공익령4 ①-4	○	○	○	○	공통
13	기본재산 목록과 그 입증서류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교육규칙 3-3 공익령4 ①-4 공익령4 ①-6	○	○	○	○	공통
14	(보통·운영)재산 목록과 그 입증서류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 비영리법인은 “운영재산”, 공익법인은 “보통재산”에 해당	교육규칙 3-3 공익령4 ①-4 공익령4 ①-6	○	○	○	○	공통
15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공익령4 ①-4	△	X	○	X	사단 법인
16	회원명부 (성명·주소·연락처) ※ 100명이 넘을 경우 “이상 100명의 ○○명”으로 총수 기재서류	공익령4 ①-8	△	X	○	X	사단 법인
17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교육규칙 3-4	○	○	X	X	비영 리법 인
18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년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공익령4 ①-7	X	X	○	○	공익 법인
19	사무실 확보증명서 ※ 건물사용승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민법33, 36	○	○	○	○	공통

(2) 법인설립이후의 절차

- 주무관청 → 법인 : 허가서 교부

■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서를 전달받은 법인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① 설립등기: 관할등기소에 등기
- ②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관할세무서에 신고
- ③ 재산이전: 출연재산 법인명으로 이전
- ④ 법인설립등기 완료사실 및 법인에게로 재산이전 완료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

■ 설립허가 후부터 주무관청은 다음의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함.

- ① 재산이전 및 등기 보고
- ② 설립허가 취소 등 제재사항
- ③ 임원 결원방지
- ④ 사전허가(승인) 및 보고사항 적기 수행
 - (i) 기본재산 처분 허가
 - (ii)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 사용승인(공익법인)
 - (iii) 예산 및 결산 보고
 - (iv) 수익사업 : 정관변경 허가 및 사업별 승인(공익법인)
 - (v)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공익법인) 등

- 주무관청 → 세무서: 법인 설립허가사실 통보(상증법 제48조 제7항)
- ※ 비영리법인도 상증법상의 공익법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통보를 요함

바. 법인설립등기

(1) 개설

- 사단이든 재단이든 법인성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민법 제49조 제1항).

- 이때 등기기간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기산함(민법 제53조).

- 「주된 사무소」란 사무소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법인활동의 중심을 이루는 사무소를 말하지만, 설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 정관과 등기부에 주된 사무소로 기재된 사무소를 의미함.

(2) 등기사항

- 민법 제49조 제2항은 아래 사항을 등기사항을 규정함

- 목적 :

■ 법인이 영위 또는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함.

■ 또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행하는 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 명칭 :

■ 법인의 명칭은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는 명칭을 제외하고는(은행법 제14조, 보험법 제8조 제2항 등)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다만 법인명칭의 등기시에 법인의 종류(즉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를 부기하여야 함(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4조)

- 사무소 :

■ 법인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함. 사무소가 수개인 때에는 그 중 1곳을 주된 사무소로, 나머지를 분사무소로 등기함.

■ 정관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할 때에는 최소행정구역까지만 기재하여도 무방하지만, 등기상에는 소재지의 구체적인 지번까지 등기하여야 함.

- 설립허가의 년월일 :

■ 주무관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설립허가서」에 기재된 일자를 등기함.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 :

■ 법인이 존속하기로 하는 기간을 미리 정하여 놓거나, 법정해산사유 이외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인이 해산하기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등기함. .

- 자산의 총액 :

- 자산의 총액이란 정관상의 기본재산은 물론 기타 법인이 보유하는 일체의 적극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액을 의미함.

-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시에 자산총액이 전혀 없어도 상관 없지만,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자산총액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함. 다만 사단법인의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0원으로 기재될 수는 있지만, 자산총액을 미정 혹은 공란으로 하여 등기할 수는 없음.

-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가령 사단법인의 정관에 발기인이나 사원들의 출자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재단법인의 정관에 설립자가 정기적으로 출연하기로 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사항은 등기하여야 함.

- 이사의 성명·주소 :

- 법인의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여야 함.
- 또한 이사의 등기시에 주민등록번호도 등기하여야 함(비송사건절차법 제62조).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정관이나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음(민법 제59조 제1항).

- 그러한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등기하여야 하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음을 이유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민법 제60조).

2. 설립허가상의 실무

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업무

-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하여야 한다.
 - ▶ 법인허가 신청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공공성을 확보하여야하고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과 조직, 인력 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 ▶ 목적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써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유지·증진하여야 한다.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어야 한다.
 - ▶ 이사 중 1인 이상이 관련분야의 충분한 경력이 있는 지 여부, 감사가 회계관련 경력 및 지식이 있는 지의 여부, 출연재산의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져 있고, 부동산의 경우에 등기 여부 등 재산권 확보가 가능한 지 여부, 재산출연자 또는 설립발기인 및 법인의 임원(이사·감사)의 행위능력 여부 등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니어야 한다
 - ▶ 설립허가 신청법인의 명칭은 유사법인 명칭등과 혼동이 되기 쉬우므로 명칭을 다르게 정해야한다.

<법인설립허가의 법적 성격 및 불허가처분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 1996. 9. 10, 95누18437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법인으로 성립할 수 있음. 다만 허가여부는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허가를 얻지 못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은 되지 못함.

※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설립허가시 불일 조건
 - ▶ ‘○○부장관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불일 수 있다’

<허가조건>

1. 법인이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공익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할 것
2. 법인이 공익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정관으로 특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할 것
3. 법인이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할 것
4.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으로 증명하는 등기부 등본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재산이전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것
5. ○○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① ○○부소관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호의 규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②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할 때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 ⑤ 민법 및 이 규칙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한 때

나. 관련구비서류

- 설립취지서

- 발기인 인적사항

-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 인감증명서

-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 임원취임승낙서
 - ▶ 임원취임자의 취임 승낙의사 표시와 인적사항 기재
 - ▶ 이사 및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고 날인
- 인감증명서
- 임원의 이력서

-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 회의록에는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의결,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의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발기인 전원이 기명하고 인감 날인(★ 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 인감 간인)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출연자확인서(*재단법인만 해당)

-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 출연인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인감날인, 출연자 인감증명서 첨부
-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도록 함

- 재산총괄표

-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목록

■ 법인이 출연하는 재산 중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함

■ 출연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금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재

▶ 기본재산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가액 등을 기재

▶ 보통재산 :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등을 기재

■ 기본재산이 수익발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수익산출 근거를 명시

▶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수익확인서, 배당이익증명서, 이자수익확인서, 납세필증 등)첨부

※ 기본재산의 증가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관의 변경절차를 동일하게 거침

- 기본재산의 증가·처분자체가 주무관청의 허가대상은 아니나 기본재산이 정관의 별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본재산 변동은 별지개정사항이 되어 정관변경절차가 필요하기 때문

※ 법인이 계약 등 법률 행위 시에는 반드시 법원에 등기한 대표이사의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고, 법인의 직인은 공시된 것이 아닌 임의의 것임에 유의

- 회원명부(*사단법인인 경우)

- 사업계획서

- 사업 수입·지출예산서

■ 기본방향, 주요추진사업, 주요사업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수지예산서의 내용이 담기도록 작성

대법원 1999.7.9.선고, 98다9045 판결

【 판시사항 】

[1]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를 한 경우,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이 기본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

【 판결요지 】

[1] 민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 준용되는 민법 제555조는“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의 해제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해제는 민법총칙상의 취소와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서면에 의한 출연이더라도 민법 총칙규정에 따라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행위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 제48조에 의하여 법인 성립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도 위 양당사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를 한 경우에는 출연자는 재단법인의 성립여부나 출연된 재산의 기본재산인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다. 설립허가시 검토사항

(1) 재량에 의한 판단사항

(가) 법인설립의 필요성

- 법인의 설립 목적과 주된 활동사업의 독자성, 전문성, 사업수행가능성, 비영리성, 공익성, 합법성과 과거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를 검토

■ 영리 아닌 사업이라 함은 개개인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 즉 수익금이 구성원(개인)에게 배분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 즉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음

■ 다만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그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개인)에게 분배되어서는 안됨

- 법인의 명칭, 설립목적, 목적사업 등이 보건복지관련 법인의 범위와 소관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

(나)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 불허
- 법인의 목적과 주된 활동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경우를 지양
- 법인의 명칭과 목적, 소재지, 사업내용(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부합되어야 함

※ 재단법인의 경우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함

(다)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 법인의 목적사업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함

■ 독립된 사무실 확보 및 상근직원 근무여부를 검토

(라)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 출연재산으로부터 과실금(재단법인), 회비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사단법인)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 과실금 또는 회비를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총규모와 대비
 - 기본재산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부동산(대지, 건물, 임야 등) 또는 재산감소가 초래되지 않는 동산(현금, 임차보증금)으로 함
 - 기본재산 중 부동산은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금액중 부동산등기부상 담보권 설정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동산 중 임차보증금은 부동산 등기부상 선순위 담보권 설정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 재단법인인 경우 출연재산이 법인 설립등기 즉시 법인으로 이전 가능한지 여부와 재산출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출연재산의 활용 가능여부를 검토
 - 기부재산은 소유자별로 작성하되, 반드시 총회 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기부를 승인하였는지 확인
 - 기본재산의 연간 수익발생 시기 및 수익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었는지 여부
- ※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며,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됨
- 사단법인의 경우 필수 구성요소인 회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인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함
- 부동산 임차보증금은 법인 운영의 안정을 위해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으로 할 수 없으나, 설립허가 후 법인 재산으로 이전 등기 시에는 가능함

(2) 정관 검토사항

- 다음의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정관변경의 주무관청 허가규정
 -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 기본재산목록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을 별지형태로 첨부
 - 법인해산 시 해산신고 및 잔여재산 처분허가규정
 - 임원의 정수를 정함에 있어서 이사 수에 회장 또는 부회장 등이 포함

되는지 명시

- 법인의 임원은 가급적 정수로 표기하되 범위를 지정할 경우 최소한으로 지정

- 법인의 목적사업: 법인의 목적사업의 종류를 구체성 없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법인 목적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사업을 방만하게 나열하지 않도록 규정

- 다음의 사항은 규정하지 않도록 유의

- 주무관청의 기본재산처분허가권(정관변경절차로 같음)
- 주무관청의 임원취임 승인권(*공익법인의 경우만 해당)
- 주무관청의 법규상 근거가 없는 사업계획 승인권
-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의 가입절차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두는 규정
- 이사회 등에서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등과 같은 규정
- 사단법인의 경우 이사의 선출을 이사회에서 하도록 규정(총회에서 선출)
- 재단법인의 경우 이사의 표결권을 위임 또는 포기하도록 정한 규정
- 공무원을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당연직으로 규정하거나 선임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규정

(3) 구비서류의 누락여부 검토

- 설립발기인의 날인 및 계인날인 여부와 인감대조
- 임원 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의 인감대조
- 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검토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 필요

라.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

- 처리기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를 처분
- 처리방법

-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 허가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

※ 설립허가 후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허가 관청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허가증을 재발급 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앞면 또는 뒷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통보

- ① 법인의 명칭 변경(정관변경허가 신청 필요)
- ② 사업내용 변경(정관변경허가 신청 필요)
- ③ 허가조건 변경
- ④ 소재지 변경
- ⑤ 대표자 변경

- 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허가조건의 예

- 법인설립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
-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중단하지 말 것
-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할 것 등

※ 권고사항

- 매년 가시적인 활동실적이 있을 것
- 주무관청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지 않을 것
-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거나 그 수익금을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 허가증 발급 시 대장에 등재
 - 신청서 구비서류 및 법인관련서류는 법인이 존속할 때까지 별도대장으로 관리

II. 공익법인의 설립

1. 공익법인의 설립요건

가. 재산의 출연

- 공익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재원이 필요함. 공익법인법 제 4조 제1항은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 그러한 출연재산 또는 재원을 기본재산이라고 함. 공익재단법인의 경우 출연된 재산에서 창출되는 과실로 그리고 공익사단법인의 경우에는 회비나 기부금 등의 재원으로 사업목적달성을 달성할 수 있어야 허가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출연재산에 의한 사업목적달성’ 요건은 ‘사업의 목적’ 과 함께 중요한 설립요건임.

나. 정관의 작성

- 공익법인의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음(공익법인법 제3조).

- 목적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 기타 정관에 기재할 사항(공익법인법 시행령 제3조)

-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함.
-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 및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다. 주무관청의 허가

-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 허가신청서와 함께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설립취지서, 정관,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 1부,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공익법인법 시행령 제4조).

- 위의 서류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해야 하고(공익법인법 제4조 제1항),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음.⁵⁾

라. 임원의 구성

- 공익법인의 경우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달리 임원의 구성에 있어서 엄격한

5)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5조 (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요건을 요구받는다.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어야 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음(공익법인법 제5조 제1항). 그러나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동조 제5항).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란 출연자, 출연자 또는 이사의 일정 범위 내의 친족,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등을 말함(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마. 설립등기

-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49조 제1항). 이러한 법인설립등기를 한 공익법인은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 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공익법인법 시행령 제9조).

2. 설립허가상의 특수문제

- 수혜자 범위 한정 합의 (공익법 제6조①②)
 -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무상공여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음.
 - 그러나, 목적사업의 수혜자 범위를 불가피하게 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한정내용을 “설립취지서”, “창립총회 회의록”,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주무관청은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 특수관계자의 제한 (공익법 제5조⑤⑧, 공익법 제12조)
 - 출연자 등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자”)가 그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사실상 건전한 공익사업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므로 특수관계자는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사는 이사와 특수관

계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제한규정을 두어 공익사업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

<특수관계자의 범위>

출연자	출연자가 자연인		출연자
	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법인		당해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포함
	출연자가 기타의 법인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
	※ 이하에서 「출연자」는 위의 모든자를 포함함		
출연자 또는 이사의 친족	부계	6촌이내의 부계혈족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함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2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모계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처족	처의 3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자 포함)	
입양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사용인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생계 의존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출연자 또는 이사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기타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 주무관청간 협의

■ 목적사업이 2개 이상 주무관청에 속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공익령 제5조②)

- 설립허가 조건

■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공익법 제4조②, 공익령 제6조①)

▶ 사단법인의 경우 회비에 의하여 경비에 충당할 비율과 회비 징수 방법 기타 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 할 수 없다는 뜻

▶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기타

■ 수지예산서상 기본재산 운용소득(果實金)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70% 이상 사용할 것(상증법 제48조②-3·4의2, 상증령 제38조⑤·⑥)

■ 이사는 5 ~ 15의 범위내에서 정수(定數)로 정하고, 감사는 2인으로 정할 것(공익법 제5조①)

■ 임원은 결격사유가 없을 것 (공익법 제5조⑥)

■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공익법 제5조④)

* 설립허가 후 이행사항

■ 공익법인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개월내에 재산이전보고서를,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공익령 제8조, 제9조).

■ 비영리법인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내에 재산이전보고서를,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조)

제2절 법인설립 후 조치사항

I.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 근거 : 법인세법 제109조 ①,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함.
- 수익사업을 할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등록하여야 함.
 - 기본재산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 해당됨.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함(법인세법 제109조①).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수익사업을 실시하는 법인 해당).

<등기소 등기 및 세무서 신고 구비서류>

등기소 등기	세무서 신고
① 등기신청서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등록신청서
② 법인설립 허가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정관(재산목록 포함)	③ 정관 사본
④ 이사 취임승낙서	④ 법인설립 허가서 사본
⑤ 주민등록등(초)본(이사)	⑤ 임대계약서 사본
⑥ 인감증명서(이사)	
⑦ 법인인감신고서	
⑧ 공증받은 창립총회회의록	
⑨ 등록세영수필확인서	
⑩ 위임장(대리인)	

II. 법인설립등기 보고 (등기사항의 보고 ?)

- 근거 : 민법 제33조, 제49조, 제53조
-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및 대표자인감등록을 하여야 함.
- 등기기간 : 허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3주간내에 등기
- 등기사항 :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년월일, 존립시기, 자산의 총액(기본재산만 해당), 출자방법,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사항(이사장을 말함)
- 등기비용 : 등록세, 교육세, 기타부대비용(공증료,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기타 실비상당액)

* 등기에 관한 내용은 후술

III. 재산이전 등 이행결과보고

- 기부 또는 출연된 재산의 소유권을 지체 없이 법인명의로 이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지도
 -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의 법인 명의로의 금융기관예치, 주식의 명의개서, 각종 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재산이전 증명서를 구비
 - 특히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재산 중 유동성이 심한 예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수시로 재산변동 상황을 파악

- 근거 : 공익령 제8조, 제9조, 교육규칙 제5조
- 이행결과 보고
 -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 및 세무서 신고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에 보고하여야 함.

- 보고기한

구 분	재산이전보고	등기보고
공익법인	허가후 3월 내	등기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비영리법인	허가후 1월 내	등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고유번호증(세무서 발급)
- 재산이전 보고서
 - ▶ 법인명의로 이전된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소유증명서, 기타 권리증명 증빙서류를 첨부함.
 - ▶ 출연하기로 한 보통재산이 설립등기 비용 등으로 차액이 발생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IV. 장부 및 서류의 비치 (민법: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의 비치)

-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
 -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이를 작성
- 사단법인은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
- 법인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함.

번호	서류 및 장부명	보존기간	근거
1	재산목록	10년이상	민법 제55조
2	장부와 중요증빙서류	10년	상법 제33조
3	전표	5년~10년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법인세법 제112조 상증법 제51조, 상증령

			제44조 소득세법 제160조
4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	3년	근로기준법 제41조·제42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
5	사원(회원)명부(사단법인)	영구	민법 제55조
6	회의록	10년이상	민법 제76조
7	설립허가서(정관포함), 정관변경허가서(정관포함)	영구	
8	임원취임(해임) 승인 문서	영구	
9	기타 허가·승인·보고 문서	해당사업 종료후 5년이상	

■ 재산목록 및 회의록의 보존기간에 대한 직접 근거규정은 없으나 장부와 중요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이 10년인 점을 감안하여 최소 10년은 보존할 필요가 있음

■ 상법 제33조는 전표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따로 정하고 있으나, 상증법 제51조는 전표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장부 및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모두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점, 상증령 제44조가 일정한 경우에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장부로 인정할 수도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10년간 보존할 필요가 있음

■ 사원(회원)명부의 보존기간에 대한 직접 근거규정은 없으나 민법이 사원(회원)의 변경사항을 사원(회원)명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사원(회원)은 사단법인의 본질이므로 법인이 존재하는 동안 보존되어야 함

■ 정관과 설립허가는 법인이 인격을 부여받은 근거이므로 설립허가서(정관포함) 및 정관변경허가서(정관포함)는 법인이 존재하는 동안 보존되어야 함

■ 임원취임(해임) 승인 문서는 법인의 역사를 나타내고, 책임의 귀속을 판단할 자료이므로 법인이 존재하는 동안 보존되어야 함

■ 개별법 또는 다른 관청이 위에서 정하지 않은 장부·서류의 비치의무를 정하거나 위의 기준이상의 보존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

<공익법인의 법인설립 후의 절차>

○ 설립등기

-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49조 제1항). 이러한 법인설립등기를 한 공익법인은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9조).

○ 재산이전의 보고

- 공익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월내에 재산이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재산이전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8조).

○ 수익사업의 승인신청

- 공익법인이 수익사업경영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승인신청서에 ① 사업계획서, ②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③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④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1조).

제3절 법인의 해산 및 청산

I.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해산

1. 법인해산사유

가. 법인공통해산사유

□ 민법 제77조 제1항은 다음의 사유를 법인의 해산사유로 규정함

- 존립기간의 만료 :
 - 사단법인에서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재단법인에서는 임의적 기재사항임.
 - 또한 법인의 등기사항임(민법 제49조 제2항)
-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
 - 목적을 달성했는지 또는 달성이 불능한지는 사회관념에 따라서 결정함.
 - 목적의 달성불능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목적을 완료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정적인 것을 의미하므로, 설사 일시적으로 그 목적 달성이 불능일지라도 그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함.
-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
 - 사단법인에서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재단법인에서는 임의적 기재사항임.
 - 또한 법인의 등기사항임(민법 제49조 제2항)
- 법인의 파산 :
 - 법인이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상태, 즉 채무초과가 된 상태를 의미함.
 - 법인의 파산원인은 자연인과 달리 지급불능에 이를 필요가 없이 단순

한 채무초과로써 충분함.

■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함(민법 제79조). ☞ 이사가 파산의 신청을 게을리 하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됨(민법 제97조 6호).

- 설립허가 취소 :

■ 민법은 다음 3가지를 법인설립허가의 취소사유로 들고 있음(제38조).

- ①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 ②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
- ③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위의 한 경우에 해당하면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그렇지만 이외의 사유로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음. 대법원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판시함(大判 1977. 8. 23. 76누145). 따라서 이를테면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사유에 해당될 수는 있어도 주무관청이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님.

<설립허가의 취소와 관련한 문제>

(1) 설립허가 취소요건

-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요건은 아래 3가지에 한정됨.

관련판결: 대법원 1968.5.28. 선고 67누55 판결

【판시사항】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비영리법인 설립후에 있어서의 허가취소는 본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국한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으로는 본법 제77조 소정 당연해산사유에 해당될지 몰라도 그 사유만으로 설립허가를 취소할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

▶ 법인의 목적이란 법인정관에 정하여진 목적을 뜻하므로,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법인정관에 기재된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민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됨.

▶ 다만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사업을 하는 것은 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 예컨대 암예방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비를 징수하거나 관련서적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가능.

▶ 특정한 비영리목적의 법인이 다른 비영리목적의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외의 사업이라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예컨대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학술사업을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설립허가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짐. 그 이유는 설립허가취소의 근거가 민법의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기본권제한에 관한 행정법적 규정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새길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실질은 영리사업을 하면서도 회사법이나 조세법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등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만약 그러한 정관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다른 비영리사업이 지속된다면 주무관청은 법인사무의 검사·감독권(민법 제37조)의 일환으로 법인의 정관변경을 명할 수 있을 것임.

■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 :

▶ 주무관청은 일정한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하여 법인설립을 허가할 수

있음. 그러한 조건을 전제로 법인이 설립되었음에도 법인이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예컨대 일정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설립이 허가된 경우에 그 조건으로 정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면 법인설립조건을 위반한 것이 되고 이때 주무관청은 그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다만 그 조건이 법인의 설립허가조건인지 혹은 주무관청의 단순한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인지를 실제로 판별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음.

관련판결: 대법원 1977.8.23. 선고 76누145 판결

【판시사항】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판결요지】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존재가 공익을 해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한편 감독관청에 제출할 서류를 기한 보다 지연하여 제출한 사실만으로 설립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 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행위는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이것은 법인설립 당시에는 법인의 목적사업이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그 후 사정변동에 의하여 그것이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되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것임.

▶ 무엇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문제됨.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바, 대법원은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함(大判 1982. 10. 26. 81누363). 그렇지만, 법인의 기관이 한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행위로써 한 것일 때에는 이를 이유로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없음(大判 1966. 6. 21. 66누21)

▶ 공익을 해하는 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고 법인의 기관이 한 행위 혹은 사원총회의 결의내용이 구체적으로 형법 또는 행정법상 규정에 위반하거나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관련판결: 대법원 1982.10.26. 선고 81누363 판결

【판시사항】

- 가.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
- 나.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 가. 비영리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 나. 원심이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 법인 설립후 그 회장선거 및 운영을 둘러싸고 일부 회원 사이에 불미한 사실이 있었으나 그것이 원고법인의 기관의 행위이었거나 사원총회의 결의 내용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법인에 설립허가 취소사유 및 해산명령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설립허가취소 및 해산 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적법히 수긍된다.

관련판결: 대법원 1966.6.21. 선고 66누21 판결

【판시사항】

비영리법인에 있어, 성질상 이사장 개인의 행위를 잉유로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본조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를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설립당시에는 그 목적사업도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그 후 사정변동에 의하여 그것이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되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2) 취소절차와 효력

▶ 민법은 설립허가를 해준 주무관청이 설립허가의 취소권한을 갖는다는 것 외에, 그 취소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음. 따라서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의거하여 법인에 대한 검사·감독권을 행사한 다음 설립허가를 취소하든지 또는 검사·감독권을 행사하지 않고 곧바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다만 어느 경우에도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할 것이 요구됨.

(3) 구제절차

▶ 주무관청에 의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됨. 따라서 이에 불복이 있는 법인은 행정심판법에 기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다시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설립허가취소처분으로 인해 법인은 청산법인으로 되어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지만, 만약 설립허가의 취소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면 취소처분의 효과는 소급해서 상실되므로 취소처분이후에 청산 목적을 넘어 행해졌던 법인의 행위도 모두 유효로 인정됨.

나.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 민법은 그 외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로 다음 2가지를 명시함(제77조 제2항).

- 사원이 없게 된 경우 :

■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이 모두 사망하거나 퇴사 기타의 사유로 한 사람도 없게 된 경우를 말함. 사원이 한 명이라도 남아 있게 되면 그 남은 사원이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수도 있으며, 또한 사원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산사유로 보지 아니함.

■ 사원이 한 사람도 없게 되어 사단법인이 해산된 경우라도 즉시 해당법인이 그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해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산절차에 거쳐 법인이 소멸됨.

- 사원총회의 해산결의 :

■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을 「임의해산」이라고 함. 이는 총회의 전권사항이므로 총회이외의 다른 기관이 해산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규정은 효력이 없음.

■ 해산결의의 정족수는 정관이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면,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함.

■ 해산결의를 함에 있어서 조건부나 기한부로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의 태도임.

나. 취소절차와 효력

- 민법은 설립허가를 해준 주무관청이 설립허가의 취소권한을 갖는다는 것 외에, 그 취소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음. 따라서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의거하여 법인에 대한 검사·감독권을 행사한 다음 설립허가를 취소하든지 또는 검사·감독권을 행사하지 않고 곧바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다만 어느 경우에도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할 것이

요구됨.

<청문절차>

□ 설립허가 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청문주재자 (행정절차법 제28조)

- 청문은 행정청의 소속직원 또는 당해 청문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동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가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청문주재는 독립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상의 이유로 신분상의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2) 청문절차의 개시·처분의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실시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당해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그 청문의 주재자,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청문의 진행 (행정절차법 제31조 내지 33조)

- 청문주재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당사자 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 당사자 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4) 청문의 종결 (행정절차법 제35조)

- 청문주재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 청문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 법인의 대표자는 허가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주무관청의 청문절차에 성실히 응해야하고 법인해산에 따른 청산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 구제절차

- 주무관청에 의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됨. 따라서 이에 불복이 있는 법인은 행정심판법에 기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다시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설립허가취소처분으로 인해 법인은 청산법인으로 되어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지만, 만약 설립허가의 취소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면 취소처분의 효과는 소급해서 상실되므로 취소처분이후에 청산목적을 넘어 행해졌던 법인의 행위도 모두 유효로 인정됨.

2. 해산절차

가. 해산등기

-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관할등기소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함.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음(민법 제54조 제1항).

- 해산등기의 기재사항

-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 이상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함

(민법 제85조 제1항).

- 해산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직책에 있는 이사, 청산인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됨(민법 제97조 1호).

나. 해산신고

-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청산인은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의 기재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 함. 설립허가의 취소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처럼 해산사실이 주무관청에 명백히 된 경우에도 해산신고를 하여야 함.

■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에는 과태료의 처벌을 받게 됨(민법 제97조 제4호).

- 해산신고 사항

-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구비서류

- 법인해산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 해산당시 재산목록 1부
- 해산당시의 정관 1부
-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 회의록 1부
-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다. 해산에 따른 효과

- 법인은 해산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해산등기의 경료여부와 관계없이 해산하게 되고 그에 따라 청산절차가 개시됨. 다만,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들

어감.

-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 즉 해산한 법인은 청산업무수행을 위한 청산법인으로 전환됨.

3. 청산

가. 청산의 의의

-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이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함

- 청산절차에는 두 가지가 있음

①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파산절차에 따라 청산됨.

② 그 밖의 원인에 의한 해산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민법이 규정하는 청산절차에 의함.

-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른바 강행규정이다(대법원 1995.02.10. 선고 94다13473 판결).

- 해산한 법인은 청산법인으로 전환되고,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게 됨(민법 제81조).

나. 청산법인의 기관

(1) 청산인

- 법인이 해산하면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이 됨(단, 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과 관련되지 아니한 그 밖의 업무에 대해서는 청산인이 집행기관이 됨).

- 청산인이 되는 자

■ 원칙: 이사가 청산인이 됨(민법 제82조)

▶ 이사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되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에도 그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은 불합리함.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84조에 의거하여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이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됨을 이유로 하여 그 청산인을 해임시키고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하는 것이 타당함.

■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자(민법 제82조)

▶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이사 이외의 자가 청산인이 된다는 뜻을 정한 경우에는, 그 자만이 청산인이 되고 종래의 이사는 그 지위를 상실함.

■ 법원에 의한 선임(민법 제83조)

▶ 다음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① 해산당시 이사가 사망·사임 등 이유로 존재하지 아니한데, 정관이나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가 이외의 청산인이 될 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이사 기타의 자가 청산인이 된 경우라도 그가 사망·사임·해임 등 이유로 청산인의 정원에 모자라 법인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 청산인의 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음(비송사건 절차법 제36조, 제121조).

- ▶ 미성년자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 ▶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청산인의 해임

■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음(민법 제84조).

(2) 그 밖의 기관

- 법인이 해산하면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기관은 해산전 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산법인의 기관으로서 마찬가지로 권한을 가짐.

- 즉 사원총회는 그대로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감사는 계속하여 청산인의 직무를 감독함.

다. 청산사무

(1) 해산등기와 해산신고

-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다음 사항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함(민법 제85조 제1항).

-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또한 청산인은 그 취임후 3주간내에 같은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함(민법 제86조 제1항).

- 청산중에 해산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민법 제85조 제2항 및 제52조)

- 청산인이 위의 등기를 게을리 하거나, 주무관청에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됨(민법 제97조 1호, 4호)

※ 파산에 의한 청산의 경우에는 등기는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한 법원이 파산사실을 주무 관청에 통지하므로(동 법률 제314조), 청산인은 해산등기의 신청이나 해산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2) 현존사무의 종결

(3)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4) 잔여재산의 인도

-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 절차를 밟은 후에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로 잔여재산이 귀속됨(민법 제80조).

① 정관에서 지정한 자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음. 단,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함

③ 위의 어느 방법으로도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됨

<잔여재산 처분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별지5호 서식]
- 처분사유서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소재지, 종류, 수량 및 금액
-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의 결의록 사본 1부

(5) 파산신청(민법 제93조)

-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
- 이 공고에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방법이 준용됨.
- 청산인이 이 파산신청을 게을리 하거나 공고해태 또는 부정공고를 하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됨(민법 제97조 6호, 7호).
-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함.

(6)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 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함(민법 제94조).
- ※ 청산인은 특히 (2), (3), (4)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음(민법 제87조 제2항).
-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함(대법원 1980.04.08. 선고 79다2036 판결).

4. 해산·청산의 검사와 감독

-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하며(민법 제95조),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함(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2항)
- 청산인이 법원의 검사·감독을 방해한 때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됨(민법 제97조 3호).

II. 공익법인의 해산

1. 공익법인의 해산사유

- 앞의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해산사유가 공익법인에도 적용됨.

2. 공익법인해산의 특수문제

- 설립허가의 취소:

(i)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ii)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iii)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iv)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v)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vi)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vii)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등으로 정하고 있다(공익법인법 16조 1항).

제4절 법인의 등기

I. 법인등기의 의미

법인은 사회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하여 그의 조직이나 내용을 등기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하는 것이 필요한 바, 현행 민법에서는 법인이 해야 할 등기를 강제하고, 이를 해태 할 경우 강제의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 법인은 사법상 법률관계에 있어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이와 거래하는 제3자가 법인의 존재, 조직, 재산상태 등 거래상 필요한 사항을 쉽게 아는 방법이 없다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힐 수 있음

■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고 그 밖의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됨

- 각 등기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등기보고서에 법인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은 생략

II. 법인등기의 양태

1. 설립등기

- 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설립등기 하여야 함

- 목 적
- 명 칭
- 사무소
- 설립허가의 연월일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자산의 총액
-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이사의 성명·주소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

2. 변경등기

- 설립등기사항 중에 변경이 있으면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 만일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면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 내에 이를 하여야 함
- 이 변경등기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3. 분사무소 설치등기

-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함
- 그러나 주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 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됨
- 법인의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른 모든 사무소 소재의 등기사항에 대한 변경이 되므로 위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4. 사무소 이전등기

-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 소재지에서는 이 기간 내에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함
- 같은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
- 사무소 이전은 다른 모든 사무소의 등기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므로 이 점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등기기간 계산법과 등기의 효력은 분사무소 설치등기와 동일

5. 해산등기

-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 내에 해산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사항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함

- 등기사항에 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3주 내에 변경등기 함

6. 요약

- 법인등기에 관한 이상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등기유형	등기내용	등기기간	결과보고	근거법령
설립등기	- 민법 제49조에 정한 “법인의 등기사항”	허가서 도착 후 3주간 내	등기완료 후 7일 이내	민법 제33조 공익령 제9조
분사무소 설치등기	- 분사무소 설치 내용	”	위 준용	민법 제50조 민법 제52조
사무소 이전등기	- 사무소 이전 내용	”	”	민법 제51조 민법 제52조
해산등기	- 해산의 사유, 일자 - 청산인 주소, 성명 과 대표권의 제한 내용	청산인 취임 후 3주간 내	”	민법 제85조
청산종결의 등기	- 청산종결의 내용	청산종료 후 3주간 내	”	민법 제94조

Ⅲ. 등기강제의 수단

- 등기의무가 있는 이사, 청산인 등이 등기를 해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민법 제97조제1호)

-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실체법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제3장 법인의 관리와 운영

제1절 법인의 기관구성 및 운영

I. 민법상 법인

1. 이사

가. 이사의 임명과 해임

- 이사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서 정함
-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된 전임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음

대법원 1988.3.22, 선고, 85누884, 판결

【 판시사항 】

- 가. 소집절차의 하자과 비영리법인 이사회결의의 효력
- 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을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다.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 범위

【 판결요지 】

-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개최되어 한 것이라면 그 이사회결의는 당연무효이다.
- 나. 당연무효인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에 대한 주무관청의 이사취임승인 처분은 그 행정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청은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다.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의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 이나 위와 같이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어디까지나 법인은 그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에 의하여서만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에 결원이 있음으로써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사 중의 일부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으로써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케 할 필요는 없 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기만료로서 당연히 퇴임하 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 이사의 직무권한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충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법적 의무를 짐
 - 이사가 의무를 위반하면 법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수인인 경우는 연대손해배상책임을 짐

(2) 법인의 대표권

□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함

- 대표하는 사무는 법인의 모든 사무로 제한이 없음
- 각자 대표하므로 이사가 수인 있어도 각 이사는 단독으로 대표할 수 있는 단독대표가 원칙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됨

- 정관에 의한 제한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고 정관에 기재하지 않는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
 -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 총회의 의결에 의한 제한
 - 민법 제59조제1항 단서에서 이사가 사단법인을 대표하는 데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단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은 회원총회의 의결로써 제한할 수도 있음

- 이익상반의 경우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음
 - 이 경우에는 임시이사 선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 특별대리인의 권한은 해당사항에 한하여 법인을 대표할 수 있을 뿐이나 역시 법인의 대표기관임은 이사와 동일함

※ 이사가 여러 명이 있고 그 가운데의 일부의 이사와 법인의 이익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이 없으나, 이때에는 다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만 특별 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

서울고법 1965.4.7, 64나110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 판시사항 】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법인을 대표하여 자기의 개인 채무를 법인으로 하여금 인수케 한 경우의 효력

【 판결요지 】

재단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 그 법인을 대표하여 자기의 개인 채무를 법인으로 하여금 인수케 하는 행위를 함은 민법 제64조의 이른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그 대표권이 없어 그 행위는 재단에 대하

여 효력이 없다.

- 복임권의 제한

■ 이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는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의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포괄적인 복임권은 인정되지 않음

(3) 법인의 업무집행권

- 이사는 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함

■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

■ 이사가 집행하여야 할 사무는 회원명부의 작성, 총회의 소집, 총회 회의록 작성, 파산신청, 청산인이 되는 것, 등기 등이 있음

- 만약 동일인이 이사에 재선되어 중임이 된 경우에 비록 그의 성명·주소에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이사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자격을 취득한 것이므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민법 제52조).

다. 임원의 운영

(1) 임원의 선임보고

- 법인에서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 임원선임보고 시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신입임원의 경우 이력서

(2)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 및 중임 또는 연임 여부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름

대법원 2000.11.24, 선고, 99다12437, 판결

【 판결요지 】

사단법인의 정관에 회장의 중임을 금지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전임자의 궐위로 인하여 선임된 이른바 보선회장을 특별히 중임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중임이 제한되는 회장에는 보선회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임원이 사임하는 행위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사임의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음

- 사임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법인의 승낙이 필요한 것은 아님

(3) 임기의 개시

- 현 임원의 임기 만료 전에 선출된 후임 임원의 임기는 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익일로 임기가 개시됨

- 임기만료 후에 선출된 후임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임기개시(소급하지 않음)

2. 감사

-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로 감사를 둘 수 있음

- 단, 당연직 감사는 불인정

-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음

-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일
-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부정 또는 불비한 것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 요구하는 일

- 감사 역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 의무에 위반 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3. 이사회

- 민법은 이사가 수인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를 법인의 당연한 기관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정관에 이사회를 두도록 한 경우 이사회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음

-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 기타 정관에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
-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 이사회 의결사항 중 정관변경, 법인 해산의 의결 등은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이 바람직함

4. 사원총회

가. 총회의 위상

- 총회는 재단법인에는 없고 사단법인에만 있는 기관으로 최고의 필수 의사결정기관

- 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으로 정관에 의하여 이를 폐지할 수 없음
-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회원은 누구나 평등한 지위에서 사단법인의 운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짐

【 판시사항 】

[1]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 및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이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

[1]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나. 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통상총회(정기총회)

- 통상총회는 해마다 한 번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
- 소집 시기는 정관 또는 회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만 만일 그 시기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이사가 정함

(2)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개최
 -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 총회원의 1/5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 ※ 총회원의 1/5이라는 정수는 정관에서 증감할 수 있음

-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소집절차

- 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을 통지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행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05, 판결

【 판시사항 】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화에 의한 총회소집통지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 결의의 효력

【 판결요지 】

사단법인의 신임회장을 조속히 선임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업무의 공백을 메워야 할 형편에 있는 정관소정의 기한 내에 전화로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소집통보를 하였으며 또한 구성원들 모두가 총회결의 등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면 총회 소집통지를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화로 하였다는 경미한 하자만으로는 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누884, 판결

【 판시사항 】

소집절차의 하자과 비영리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

【 판결요지 】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개최되어 한 것이라면 그 이사회결의는 당연 무효이다.

5. 분사무소(지부)

- 지방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하는 경우 지회가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있거나 독립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관리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

대구지법 1988.12.19 선고 88카1271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 판시사항 】

소집절차의 하자과 비영리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

【 판결요지 】

대구중구지회가 비록 독자적인 정관을 갖지 않고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의 산하단체로서 임원선출에 대한 인준을 받고 수입금의 일부를 중앙회에 납부하며 업무상 지도 감독을 받는 점 등은 인정되나, 그 지회자신이 회원다수로 구성된 임의적 단체로서 지회장, 부지회장, 상임위원, 감사 등의 기관과 정기총회라는 의결기관을 갖추고 독자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독자적인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나름대로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고 못 볼 바 아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7.10 선고 86가단2492 판결

【 판시사항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동구지부 사근동 제2분회’의 당사자 능력유무(소극)

【 판결요지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동구지부 사근동 제2분회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정관에 따라 구성된 지방조직으로서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거나 독립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제정한 운영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구성분자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다.

II. 공익법인

- 공익법인의 경우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달리 임원의 구성에 있어서 엄격한 요건을 요구받는다.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어야 하고,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공익법인법 제5조 제1항). 그러나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동조 제5항).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란 출연자, 출연자 또는 이사의 일정 범위 내의 친족,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등을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절 정관의 변경

I. 민법상 법인의 정관변경

1. 정관변경의 의미

- 정관변경은 법인의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정관에 규정된 기존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항의 신설이나 기존사항의 폐지, 자구수정이나 보완케 그치는 형식적인 변경도 모두 포함됨.

- 사단법인에서는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으나, 재단법인은 정관을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임.

2. 정관변경의 요건

가. 사단법인의 경우

-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음. 그러나 정관변경을 위한 결의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함(민법 제42조 제1항).

- 정관의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함(민법 제42조 제2항).

- 정관의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민법 제54조 제1항).

나. 재단법인의 경우

-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하지 못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관변경이 인정됨.

- ① 재단법인의 정관이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민법 제45조 제1항).
-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법인의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음(민법 제45조 제2항).
- ③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음(민법 제46조).

관련판결: 대법원 1996.05.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1] 민법 제45조, 제46조 소정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
-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정관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1]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 [2] 인가는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①과 ②의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기며, 정관의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민법 제54조 제1항).

- 사원총회가 아닌 기관에서 정관변경결의를 한 경우의 유효여부
- 정관에서 그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경우에 정관변경 가능여부
-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을 다른 것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정관목적에 추가함에 따라 다른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

3. 정관변경의 실무

가. 정관변경 대상 및 효력

- 정관의 전문이 변경대상이 됨
 -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결정한 근본규칙에 따라서 운영되는 타율적 법인이고 법인의 활동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예를 들어 사단법인의 총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정관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변경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우 사회적 실정에 맞는 활동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제약 하에 정관변경을 허용하고 있음

- 종전에는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규칙개정으로 기본재산목록이 붙은 정관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변경

-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음(민법 제42조 제2항)

나. 구비서류

-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별지 제3호서식]

- 변경사유서 1부
-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사단법인) 또는 이사회(재단법인)의 회의록(이사의 서명날인) 1부
 -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입과 지출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입과 지출 예산서
 -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다. 검토사항

□ 적법성 및 타당성

- 변경의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 「민법」,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검토
 - 정관에 따라 이사회(사단법인)의 소집통지일시 및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을 확인
 - 의결정족수(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 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를 충족하였는지 여부
 - 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법인이 수행능력이 있는지 여부
 - 재단법인의 경우 설립자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

광주고법 1987.10.23 선고, 86나316 제2민사부판결

【 판시사항 】

재단법인 목적 등에 관한 정관변경결의가 설립자의 설립목적에 반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경우, 설립자가 그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비록 그가 정관에서 정관변경절차를 정하였더라도 그

후 당초의 설립목적이나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법인의 목적 등에 관한 정관변경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설립자의 지위에서 그 효력을 다룰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무효확인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경과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

- 예를 들어 임원의 임기가 변경되는 경우(예:현행 임기 4년을 3년으로 변경)에 경과 규정이 없을 경우 현재 임원의 임기는 개정된 규정의 임기를 적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과규정을 두어 정관개정 당시의 임원에게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 정관의 변경으로 사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재원 조달 계획(재산기부 승낙사실 등) 및 수입과 지출예산 등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된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및 재산증빙서류의 타당성을 검토

□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를 검토

-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회의록에 이사의 서명날인 사항
 - 회의록은 각 면과 면 사이에 의결이사 전원의 간인이 있어야 함

라. 변경허가 및 변경 후 조치사항

- 법인정관변경허가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제출받아 처리(작성예시 4)
 - 정관 변경허가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
 - ※ 법인설립허가증 ([별지 제2호서식])의 ‘뒤쪽’에 변경사항 기재
 - 단체명칭 변경 및 법인설립허가증의 분실·훼손 시에도 동일
- 정관변경사항을 법인대장에 등재한 후 시행
-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과 같은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고 등

기완료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안내

※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은 생략

II. 공익법인의 특수문제

- 공익법인이 민법 제42조제2항, 동법 제45조제3항,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0조).

- 정관변경이유서 1부
- 정관개정안 1부
-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절 기본재산의 처분

I. 민법상 법인의 기본재산처분

1. 기본재산처분의 의미

- 법인의 존립기초가 되는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하고, 그러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기본재산처분이라고 함.

2. 주무관청의 실무

가. 기본재산 처분 등에 따른 정관변경 대상

-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대체)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부담 및 권리의 포기 시에는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가 필요

- 기본재산 처분 자체가 주무관청의 허가대상은 아니나 기본재산이 정관의 별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본재산 변동은 별지개정사항이 되어 정관 변경 절차가 필요

■ 매매 :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의 매도 시, 매수 시 각각 별도의 정관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절차를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1회의 정관변경 허가로 함

■ 교환 : 법인의 기본재산을 등가 또는 등가이상의 다른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단순히 감정평가서상 평가금액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재산의 용도, 취득재산의 법인목적에 대한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도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고 정관을 변경

■ 기본재산취득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법인의 목적사업 범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반드시 취득 전에 할 필요는 없고 연도 말 보고를 할 때 1년간의 기본

재산 취득을 종합하여 정관변경허가를 신청가능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다783 판결

【 판시사항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증가와 주무관청의 인가의 요부

【 판결요지 】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물론, 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정관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이 두 경우에는 모두 정관의 변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변경에는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주무부처의 허가가 없으면 무효임

나. 구비서류

-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별지 제3호서식]
- 변경사유서 1부
-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이사의 서명날인 또는 인감날인) 1부
-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입과 지출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입과 지출예산서
-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기본재산의 매도·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 신청 시>

- 처분이유서
-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 이사회 회의록
-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그로 인하여 소실될 재산의 보충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 등기부등본

<기본재산 취득에 따른 허가 신청 시>

- 취득사유서
- 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 이사회 회의록

다. 검토사항

□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검토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인의 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

-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불허하지만 재산이 감소되더라도 법인운영에 큰 지장이 없고 법인 목적사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용

- 인건비 등 경상비용 지출과 재산가치가 자연 감소하는 재산으로의 변경에 대한 허가는 곤란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검토

- 이사회 소집 통지일시 및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회의 목적과 부의안건 등 확인

- 이사회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서명)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

□ 처분의 구체성 확인

- 처분재산목록을 2개월 이내에 발행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확인

□ 제3자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 자격여부

- 채권자 등의 제3자는 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권한은 없음

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19202, 판결

【 판시사항 】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재단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므로 그 출연된 재산 즉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바로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고, 재단법인이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재단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양수한 자도 아니고 금전채권자들에 불과한 자에게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라. 허가내용

- 기본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정지조건부허가 또는 대체재산의 선취득을 부관으로 하는 허가가 가능

서울고법 1968.10.31, 선고, 68나1001 제5민사부판결

【 판시사항 】

재단법인의 감독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이 재단 기본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정지조건부허가를 한 경우의 효력

【 판결요지 】

피고의 감독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이 대체부동산에 대한 피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하는 정지조건처분허가를 한 경우에 그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이상 위 허가처분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기다려서 그 재산매각에 곤한 허가가 없음에 귀착한다.

서울고법 1971.3.12, 70나270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 판시사항 】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함에 있어 주부관청으로부터 대체 재산의 선취득을 부관으로 한 처분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재단법인이 대체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합의해제한 것이 위 기본재산 매매계약의 이행불능 사유가 되는지 여부

【 판결요지 】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무관청으로부터 대체재산의 선취득을 부관으로 한 그 처분허가를 받고 이에 따라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을 대체재산으로 매수하였다가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위 기본재산 처분허가의 부관을 성취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로서 위 기본재산 매매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어 그에 따른 재단법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다.

II. 공익법인의 특수문제

-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함(공익법인법 제11조).

-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

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음.

제4절 업무보고 등

I. 민법상 법인의 업무보고 등

1.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 및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 현황 등

2. 법인서류 및 장부의 배치

-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해야 함

- 법인 설립 시 재산목록(영구)
- 회원명부 비치 및 변경사항(영구)
- 정관(영구)
-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영구)
- 총회 회의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영구)
-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영구)
-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대장(영구)
-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10년)
- 업무일지 및 주무관청 관계기관과의 서류(3년)

3.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 주무관청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II. 공익법인의 특수문제

1. 공익법인의 회계

-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예산편성,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2. 공익법인의 감사

- 주무 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하게 할 수 있음.

제4장 법인의 회계와 세무

제1절 법인의 회계

I. 법인의 회계

-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름. (공익법 제12조①)
- 공익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함. (공익령 제22조, 공익령 제23조 ①)

1. 회계의 구분 (공익령 제23조)

- 수익사업회계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
 - 회계연도 중에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을 거두어들이는 수치를 예측하고 이것의 적정한 운영경비(제세공과금 및 경상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고유목적사업에 기부(전출)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회계
- 목적사업회계
 - 기타의 수익과 비용
 - 주로 수익사업회계로부터 기부(전입)된 가용재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는 규모와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상경비를 설정하는 회계

2. 서류의 관리

- 회계장부와 통장은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통장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서류 보존기간 : ??? 쪽 참조

II. 예산 및 결산

-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함. (공익법 제12조②)

1. 사업계획 및 예산

- 근거 : 공익법 제12조②, 공익령 제19조①

- 다음 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 총괄표
-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

- 예산편성시 유의사항

■ 공익법인의 예산은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추정의 근거가 명료하게 산출된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등 예산재무제표에 입각하여 편성함.

■ 예산은 제세공과금과 이월결손금 등 공제한 금액의 70/100 이상을 직접목적사업비에 편성함. (상증령 제38조⑤)

■ 인건비 및 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사무비는 직접목적사업비 계정과 명백히 구분하여 편성함.

■ 명목예산은 편성이 금지됨.

■ 현금자산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목적사업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하여야 함(법인세법 제29조).

2. 사업실적 및 결산

- 근거 : 공익법 제12조②, 공익령 제19조②

- 법인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실적 총괄표
- 사업실적(관련 증빙서 사본 첨부) 및 수지결산서
-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감사의 자체감사 보고서
- 기부금 사용내역서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이상인 공익법인은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게 세무확인을 받아 제출, 자산총액 100억원이상인 법인은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상증법 제50조, 상증령 제 43조)

- 사업연도 말의 재산목록 및 등기부등본(재산권리증명 첨부)
- 재산의 증감사유 기재서류
-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의 최종 명부
- 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 회의록(제10호 서식)

- 결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 결산자료는 재무제표규칙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수지)계산서로 하고 결산내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예산실적대비표와 함께 · 잔액시산표를 추가할 수 있음.

■ 결산상 잉여금은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익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 비로 사용함.

- 사업실적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함.
- 사단법인의 경우 연구결과물이나 세미나 등 관련자료 첨부하여 제출함.

※ 비영리 법인의 경우

- 회계의 구분

- 민법상 회계구분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정관상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 예산 및 결산

- 근거 : 교육규칙 제7조
- 법인은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예·결산서류를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장기간 각종 승인신청 사항이 없거나 무실적 법인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정상화할 의지가 없는 경우 자진해산토록 유도한다.

제2절 법인의 세무

I. 재산의 출연

1. 출연재산의 의의

“재산의 출연”이란 공익사업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 민법상 “출연”

■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출연”

■ 출연자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

2. 출연시기

재산의 출연시기는 그 날로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 최초 재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8조에 정하는 귀속시기를 출연시기로 봄.

■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 “법인설립 등기를 한 때”

■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즉 사망한 때”

- 이미 설립된 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출연시기로 봄.

※ 등기없이도 출연 부동산은 법인설립과 동시에 법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법인이 그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의 원칙에 따라 등기를 필요로 함 (대판 93다 8054, ' 94. 9.14.)

3. 출연시한

- 출연자가 법인 목적사업에 출연한 의사를 표시한 후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까지 출연하여야 함. (상속세 면제)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출연하면 됨.

4. 출연재산의 평가

- 직접 법인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평가함. 단,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시가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3조)
- 출연재산 중 1년 이상 보유한株式이 있는 경우 그株式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함.
- 출연재산 평가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증여세법의 재산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 평가가액의 계산
 - ※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 에는 이연자산과 그 사업연도 중 출연 받은 자산가액을 제외

<재산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령” 참고규정>

내 용	법 률	시 행 령	시행규칙
○ 평가의 원칙 등	제60조	제49조	제15조
○ 부동산 등의 평가 ○ 임대가액의 평가	제61조	제50조	제15조의2

○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장외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제63조	제53조 제54조 제58조	제17조
--	------	----------------------	------

II.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인세법 29조)

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법인

- 설정대상법인

■ 비영리내국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 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 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제 29조 제1항).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

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기부금

② 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

③ 학술연구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

④ 문화·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대한 기부금

⑤ 종교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

⑥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대한 기부금

⑦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⑧ 위의 ① 내지 ⑦의 지정기부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단체 등에 대한 공익성기부금

- 설정제외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과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통칙 29•56... 1).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비영리법인의 손금한도>

비영리법인	손금한도
일반비영리법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합산한 금액
학교, 사회복지법인, 국립대·서울대병원,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단체(조특령 제70조 제1항), 조직위원회(조 특법 제73조 제1항) 등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협동조합중앙회(조특법 제74조 제2항)	수익사업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60%

- 손금산입한도

■ 일반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는 ① 이자소득, ② 배당 소득(단, 「상증법」 제16조,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 ③ 특 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④ 그 밖의 수익사업소득⁶⁾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6) 수익사업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80%)를 합산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 손금산입 특례

■ 학교법인 등

▶ 학교법인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 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법인의 수익사업(④와 ⑤의 경우에는 해당사업과 해당사업시설에서 그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조특법 제기조 제1항).

①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③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④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⑥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조특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법인

⑦ 조특법 제73조 제1항 제15호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대

법 제24조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함)에서 이자소득,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의한 결손금과 제24조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6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조특법 제74조 제2항, 조특령 제70조 제2항·제3항).

-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비영리법인

- ▶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중 해당 법률에서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기금에서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조특법 제74조 제3항 및 조특령 제70조 제4항).

- 손금산입한도초과처리액의 처리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가능한도를 초과하여 계상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다만, 동 금액을 환입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통칙 29-56...3).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 고유목적사업의 정의

-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등의 용도로 지출하여야 하며, 이때 '고유목적사업,이란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보는 경우

-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①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②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③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④ 농업협동중앙회가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

⑤ 농업협동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새마을금고연합회·산림조합중앙회 등이 관련 법률에 의한 예금자보호기금 등에 출연한 금액

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및 이자상당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제29조 3항).

▶ 해산한 때 및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취 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 한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가능기간인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통칙 29-56...5①)

- 이자상당액의 납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함)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

■ 이자상당액 =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x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일수) x 3/10,000

마. 중복적용의 배제

- 비영리 내국법인 등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제외)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 등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세액감면규정 등을 동시에 적용받은 후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정신고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8항).

바. 명세서의 제출의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비치·보관하여야 하며, 동 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9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27호).

2.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상증법 16조 48조)

가. 공익사업의 종류

- 종교사업
- 교육사업
-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 한국과학기술원법 등에 의한 설립법인의 공익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단, 제3호 제외)에 따른 특례기부금단체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른 비영리 교육재단이 기부금으로 운영 하는 사업

나.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비율의 제한

-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종교·자선·학술·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증여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출연재산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으나, 재벌들이 문화재단 등을 설립하여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식출연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 즉, ①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받거나, ② 출연받은 재산(당해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5%(성실공익법인 등은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된다(상증법 제16조, 제48조).

- 초과부분 계산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

- 공익법인 등에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주식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성실공익법인 등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① 출연하는 주식 등

②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③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상중령 제13조 제9항)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 주식출연비율 제한의 예외

■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까지 제한되는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5%(성실공익법인 등은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과세하지 아니한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국·지방자치 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산학협력단이 상중령 제37조 제6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 출연재산의 사용의무 위반시 증여세 추정

①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단, 직접 공익 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

②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경우

③ 출연받은 재산의 운[^]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미달(운용소득의 70%)하게 사용한 경우(단, 운용소득 중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상중법 제78조 제9항).)

④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날까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1년 이내: 매각대금의 30%, 2년 이내: 매각대금의 60%, 3년 이내: 90%)하게 사용한 경우(단, 매각대금 중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상중법 제78조 제9항).)

⑤ 그 밖의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① 출연자 및 그 친족, ② 출연

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 ① 및 ②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⑥ 출연재산 및 직적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거나 공익목적사업이 일부의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등 시행령 제38조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 내부거래 금지대상자

① 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② 출연자가 위 ①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③ 출연자의 사용인

④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의 임원

⑤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⑥ 상중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 금지

■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상중령 제38조 제1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5인 이하인 경우 5인으로 본다)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이사가 아닌 임·직원(의사,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제 외)으로 되는 경우 지출된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계열회사 주식보유 초과 금지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상중령 제38조 제12항)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동일종목 주식(의결권이 있는 주식) 5%(성실공익법인 등은 10%) 이상의 보유금지의무에 추가로 당해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중 계열사 주식 등 가액이 30%(상중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은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매 사업연도말 현재 그 초과분에 대한 시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등과 성실공익법인 등은 계열회사 주식보유 초과 금지 공익법인 등에서 제외한다.

- 성실공익법인 등의 범위

■ 성실공익법인 등이란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을 말한다(상증령 제13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38조 제5항 및 제6항).

① 해당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상증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 등

②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상증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

③ 상증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 등

④ 상증법 제50조의 2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

⑤ 상증법 제50조의 3에 따라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 등

다.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해당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수입 과 지출,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상증령 제12조 제1호 및 제43조의 2 제1항, 제9항).

- 전용계좌 사용의무 거래의 범위

■ 공익법인 등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

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여기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위탁등을 통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중령 제43조의 2 제4항).

㉠ 송금 및 계좌 간 자금이체

㉡ 수표·환어음·약속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선불카드(선불전자 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포함)·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포함)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②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경우. 다만,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경우로서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전용계좌 사용의무 거래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상중령 제43조의 2 제5항).

③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④ 공익목적 사업과 관련된 1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장학금·연구비·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상중령 제43조의 2 제6항)

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 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함)하는 경우

- 전용계좌 사용·개설·신고의무 위반시 관련 가산세

■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①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Max(㉠, ㉡)

㉠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

㉡ 전용계좌 사용의무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

라. 보고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은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상증령 제41조 제1항 및 상증규칙 제25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공익법인 등이 상증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고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불분명한 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상증법 제78조 제3항).

-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 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 해당 공익법인의 대표자·이사·출연자 등 기본사항, 주식보유 현황 등과 같은 결산서류 등을 해당 공익법인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 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공익법인의 범위

■ 자산규모 또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 공익법인 등은 결산서류 등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상증령 제43조의 3 제1항, 제2항, 제2조 제1호).

①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10억원 미 만인 공익법인 등

②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

- 공시대상 결산서류 등과 그 공시방법

■ 공익법인 등은 다음의 결산서류 등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

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즉, 공익법인 등이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표준서식(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류 등을 직접 공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 43조의 3 제3항, 제4항 및 시행규칙 제25조 제6항).

- ① 대차대조표
- ②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 ③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
- ④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이사·출연자·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사항

- ⑤ 주식 보유 현황 등 다음과 같은 사항
 - ㉠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
 - ㉡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 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 주식 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 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 국세청장의 공시요구 및 오류사항 시정요구

■ 국세청장은 공익법인 등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는 법 제78조 제1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고 해당 공익법인 등의 주 무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3조의 3 제5항).

-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미이행 가산세

■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3편 법인관련 실무자료

제1장 업무서식

제2장 주요 판례

제3장 주요 민원사례

제3편 법인관련 실무자료

제1장 업무서식

- 법인 설립 관련 서식
- 법인 정관변경 관련 서식
- 법인 보고사항 등 관련 서식
- 법인 점검/해산 관련 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99.11.2>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 월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법인	⑤명칭			
	⑥소재지		⑦전화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p>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법무부장관 귀하</p>				
<p>※ 구비서류</p> <p>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p> <p>2. 정관 1부</p> <p>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p> <p>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p> <p>5.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명함판 사진첨부) 및 서명·날인한 취임승낙서 각 1부</p> <p>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p>				수수료
				없음

23231-68111인

210mm×297mm

94.12.16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법인설립허가증
법 인 명	
소 재 지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허 가 조 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법무부장관 인

23231-68211일

210mm×297mm

94.12.16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m²)

[별지 제3호서식]

<input type="checkbox"/> 사단 <input type="checkbox"/> 재단)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①명 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	
⑥주소		⑦전화번호		
⑧설립허가일자		⑨설립허가번호	제 호	
<input type="checkbox"/> 민법 제42조제2항 <input type="checkbox"/> 민법 제45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정관변경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조표 첨부) 1부 3.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신·구대조표 첨부) 1부				수수료 없음

23231-68311인

210mm×297mm

94.12.16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5.31>

법 인 해 산 신 고 서				처리기간
				10 일
청 산 법 인	①명 칭			
	②소 재 지		③전 화 번 호	
	④청산인성명		⑤주민등록번호	-
	⑥청산인주소		⑦전 화 번 호	
⑧해 산 연 월 일				
⑨해 산 사 유				
<p>「민법」 제8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고 인 (서명 또는 인)</p> <p>법무부장관 귀하</p>				
구 비 서 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없 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6호서식]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①명 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대표자(이사·청산인) 성명		⑤주민등록번호	-
	⑥주소		⑦전화번호	
처분재산	⑧종류			
	⑨금액			
	⑩처분방법			
처분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년 월 일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신청인 (서명 또는 인)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법무부장관 귀하 </p>				
<p>※ 구비서류</p> <p>1. 해산당시의 정관 1부</p> <p>2. 총회회의록 사본(사단법인의 경우) 1부</p>				<p>수수료</p>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없 음</p>

23231-68611인

94.12.16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6호서식] 법인청산종결신고서

청산종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청산 연월일

청산 취지

민법」 제94조 및 「○○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청산인)

(서명 또는 인)

법 무 부 장 관 귀하

신고인(청산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작성예시

- <예시 1> 설립취지서
- <예시 2> 발기인 인적사항
- <예시 3>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 <예시 4> 임원 취임 승낙서
- <예시 5> 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
- <예시 6> 출연자 확인서(재단법인)
- <예시 7> 기본재산기증승낙서
- <예시 8> 보통재산기증승낙서
- <예시 9> 재산목록
- <예시 10> 회원명부
- <예시 11> 사업계획서
- <예시 12> 사업수지예산서
- <예시 13>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 <예시 14> 정관변경허가서
- <예시 15> 연도 말 보고

제2장 주요판례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 판시사항 】

- 가. 출연재산의 재단법인에의 귀속과 등기
- 나.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의 경우 출연재산의 귀속과 등기

【 판결요지 】

가.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이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의 위 조항에 의하여 법인 성립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도 위 양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요건(법인의 성립)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나.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는 그 법인에의 귀속에는 법인의 설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재단법인이 그와 같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유언장이 상속인의 한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다783 판결

【 판시사항 】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증가와 주무관청의 인가의 요부

【 판결요지 】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물론, 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정관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이 두 경우에는 모두 정관의

변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변경에는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주무부처의 허가가 없으면 무효임

대법원 1996. 5. 16.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 판시사항 】

- [1] 민법 제45조, 제46조 소정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
-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정관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

[1]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2] 인가는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전원합의체]

제3장 주요 민원사례

○ 주 목적사업의 변경으로 주무관청을 변경⁷⁾하는 것이 가능한지

공익법인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⁸⁾할 수 있는데, 주된 사무를 주관하는 행정관청이 주무관청이 되므로⁹⁾, 결국 정관 변경으로 주된 사무가 변경되는 경우 주무관청도 변경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허가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경상남도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정관변경 인가 승인을 받지 않고 경상남도에서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본건 사회복지법인 정관 제3조 제2항에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분사무소 위치 등에 대한 정관 규정이 없으므로 경상남도 분사무소 설치 및 활동이 정관 위반도 아니고, 이 때 정관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정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본건 사회복지법인은 경상남도 관내 사업인 본건 장애인재활직업사업을 수행할 권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됨

7) 본 사안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에서 외교통상부로의 주무관청이 변경이 문제되고 있음.

8) 공익법인법 제1조, 공익법인법시행령 제28조, 민법 제45조 제3항, 제42조 제2항.

9)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부록:

민법, 공익법인법·시행령 및 법무부규칙 4단 비교

민법, 공익법인법 · 시행령, 법무부법인규칙 4단 비교

민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장관소관비영리 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정의)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삭제 3. 정관 1부

		<p>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4.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p>②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삭제 6. 당해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7.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명함판사진 첨부) 및 서명·날인한 취임승낙서 각 1부 8.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삭제
	<p>제4조(설립허가 기준)</p> <p>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p>	<p><u>제4조(설립허가신청)</u> ①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정관 	<p>제4조(허가) ① 법무부 장관은 <u>제3조</u>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때에는 <u>별지 제2호서식</u>의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p>

	<p>립허가를 한다.</p> <p>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p> <p>2. 설립취지서 1부</p> <p>3. 정관 1부</p> <p>4.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 1부,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p> <p>5. 삭제</p> <p>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부</p> <p>7.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p> <p>8.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p> <p>9. 삭제</p> <p>②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p> <p><u>제5조(설립허가)</u>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p>	<p>한다.</p> <p>② 법무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	--	--	---

		<p>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p>②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p>	
		<p><u>제6조(설립허가시에 붙일 조건)</u> ①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단법인의 경우에 회비에 의하여 경비에 충당할 비율과 회비징수방법 기타 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 의 특수관계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 3.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의 조건을 반드시 붙이되, 주무관청이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한정할 범위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행정관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설립이 허가되는 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과 합의하여야 한다.</p>	
		<p><u>제8조(재산이전의 보고)</u> 공익법인(재단법인에 한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개월 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재산이전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 주무관청에</p>	

		<p>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p>	
<p>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u>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신청)</u> ① 공익법인이 <u>법 제4조제3항</u>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경영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3. 사업에 종사할 임원 명부 1부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p>② 공익법인이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5조(재산이전의 보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후 지체없이 <u>제3조제4호</u>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월 이내에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등 증빙서류를 재산이전보고서에 첨부하여 <u>법무부장관</u>에</p>
		<p><u>제9조(설립등기등의 보고)</u> 공익법인은 <u>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u>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등을 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p>	

		<p>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6조(설립등기등의 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각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제14조(감독) ①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

<p>검사, 감독한다.</p>	<p>② 주무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을 할 수 없게 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p>③ 주무 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p>료후 2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p><u>제17조(감사 등)</u> ① 주무 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p> <p>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p>	<p><u>제27조(법인사무의 감사)</u> ① 주무관청이 <u>법 제17조</u>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p>	<p>제11조(법인사무의 감독) ① 법무부 장관은 <u>민법 제37조</u>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p>	<p>여 법인사무를 감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은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p> <p>④ 주무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와 별도로 회계감사를 받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로 제3항에 따른 감사를 갈음할 수 있다.</p> <p>⑤ 제3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감사인은 감사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감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p>
<p>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p>	<p>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① 설립허가를</p>		<p>제12조(청문) 법무부장관은 민법 제38조의</p>

<p>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한 주무 관청은 공익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익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해당 사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p>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 달성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다.</p> <p><u>제16조의2(청문)</u> 주무관청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	---	--	--

<p>제39조(영리법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p> <p>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p><u>제3조(정관의 준칙 등)</u></p> <p>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p>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제3조(정관에 기재할 사항)</u> ①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u>법 제3조제1항</u>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 및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p>② 제1항제1호의 사업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p>	
<p>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p>			

<p>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p>			
<p>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p> <p>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p>		<p>제10조(정관변경허가신청) 공익법인이 민법 제42조제2항, 동법 제45조제3항,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제7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조표 첨부)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에 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신·구조비표 첨부) 1부
<p>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p>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p>			

<p>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p> <p>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p> <p>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p>			
<p>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p> <p>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p> <p>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p>			

<p>으로 본다.</p>			
<p>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p> <p>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p>제50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p> <p>②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p>			

<p>제51조 (사무소이전의 등기) ①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계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p> <p>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p>			
<p>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p>			
<p>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p>			
<p>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p>			
<p>제54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 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p>			

<p>②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p>			
<p>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p>	<p><u>제11조(재산)</u>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p> <p>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p> <p>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u>상속세 및 증여세법</u>」 <u>제16조제2항</u>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p> <p>④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u>제16조(재산의 구분)</u></p> <p>① 공익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p>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p> <p>③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p> <p><u>제17조(기본재산의 처분)</u> ① <u>법 제11조제3항</u> 본문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처분재산명세서 2. 「<u>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u> 	

		<p>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지가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p> <p>3. 이사회회의록 사본</p> <p>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p> <p>② 삭제</p> <p>③ 법 제11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기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담보에 제공할 재산 목록 2. 피담보채권액 3. 담보권자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5. 이사회 회의록 사본 <p>④ 법 제11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p>	
--	--	---	--

		<p><u>제18조(장기차입에 대한 허가)</u> ① 공익법인이 <u>법 제11조제3항</u> 본문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장기차입은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1995.7.6. 2011.8.19></p> <p>② 공익법인이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수지를 명확히 하여 당해연도내에 반드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u>제18조의2(기본재산의 처분 신고)</u> ① <u>법 제11조제3항</u> 단서에서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본재산을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이하 "매도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p> <p>② <u>법 제11조제3항</u> 단서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매도등을 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범위는 「<u>상속세 및 증여세법</u>」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기본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u>상속세 및 증</u></p>	

		<p><u>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은 각각 "매도등을 한 날의 직전 거래일부터 이전 2개월"로 본다.</u></p> <p>③ 「<u>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u>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하 "성실공익법인"이라 한다)이 <u>법 제11조제3항</u> 단서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등을 한 경우에는 그 매도등을 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주무관청에 <u>법 제11조제2항</u>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재산명세서 및 매도등을 한 재산의 명세서(제2항에 따른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각각 포함한다) 2. 이사회회의록 사본 3.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p>④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익법인에게 보정(補正)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공익법인은 보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p>	
--	--	--	--

	<p><u>12조(예산 및 결산 등)</u></p> <p>①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p> <p>②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 보고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p> <p>③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p> <p>④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예산편성,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제19조(사업계획등의 제출)</u> ① 공익법인이 <u>법 제12조제2항</u>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p>② 공익법인이 <u>법 제12조제2항</u>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p>③ 성실공익법인은 제2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상속세 및 증여세법</u>」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내역(해당 회계연도의 사용내역을 말한다) 2. 「<u>상속세 및 증여세법</u>」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자료 3. 「<u>상속세 및 증여세</u> 	
--	---	---	--

		<p>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사용내역(해당 회계연도의 사용내역을 말한다)</p> <p>4. 기본재산의 목록</p>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p>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p> <p>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p> <p>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p> <p>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p> <p>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p>제7조(임원취임승인신청) ① 공익법인이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임원취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고,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7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임원으로 취임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취임승낙서 1부 5.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6. 삭제 	

	<p>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⑦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p> <p>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p> <p>⑨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p>	<p>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p> <p>② 삭제</p> <p><u>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u> ① <u>법 제5조제5항</u>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p> <p>1.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출연자가 기타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p> <p>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p> <p>가. 6촌 이내의 혈족</p> <p>나. 4촌 이내의 인척</p> <p>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p>	
--	--	---	--

		<p>한다)</p> <p>라.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비속(直系卑屬)</p> <p>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p> <p>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p> <p>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p> <p>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한다"고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p> <p>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제4호 및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p>	
--	--	---	--

		<p>는 경우</p> <p>③특수관계가 없는 이사가 재임중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2월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이사를 개임하여야 한다.</p>	
		<p><u>제14조(상근직원의 정수 승인신청)</u> 공익법인이 <u>법 제5조제9항</u>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직원의 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기구도표와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를 명시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p> <p>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p>	<p><u>제6조(이사회)</u>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p> <p>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p> <p>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p> <p>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의 의장이 된다.</p>	<p><u>제15조(이사의 소집 승인 신청)</u> <u>법 제8조 제4항</u>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소집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재적이사 과반수의 	

	<p><u>7조(이사회)의 기능</u>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p>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찬동을 증명하는 서류</p> <p>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p>	
	<p><u>제8조(이사회)의 소집</u></p> <p>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p>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p>		

	<p>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결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p>		
	<p><u>제9조(의결정족수 등)</u></p> <p>① 이사회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p> <p>③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p> <p>④ 이사회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p>		
<p>제59조(이사의 대표권)</p> <p>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p> <p>②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p>			

정을 준용한다.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6조(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		제13조(주무관청의 감사추천) ① 주무관청	

<p>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p>		<p>은 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감사 1인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허가시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②주무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추천을 행함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에게 후보를 선정하여 추천을 의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추천의뢰된 자 중에 적격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추천 의뢰를 요구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추천할 수 있다.</p> <p>③주무관청으로부터 감사 1인을 추천한다는 뜻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추천의뢰가 없는 경우 또는 주무관청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된 감사가 임기만료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도 제2항과 같다.</p> <p>④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종전에 그 법인의 감사중 1인을 주무관청이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새로이 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의 감사중 이사회에서 지명한 자 1인은 주무관청에서 추천한 감사에 대한 취임승인이 있는 날의 전일에 퇴직된 것으로 본다.</p>	
-----------------------	--	---	--

<p>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p><u>제10조(감사의 직무)</u></p> <p>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p>②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p>		

<p>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p> <p>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p>제70조(임시총회) ①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②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p> <p>③ 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p>			
<p>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p>			
<p>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p>			

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 각 사원의 결의권 은 평등으로 한다. 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 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정 관에 다른 규정이 있 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사원이 결의권 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 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제75조(총회의 결의방 법) ① 총회의 결의 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사원의 결의 권의 과반수로써 한 다. ② 제73조제2항의 경우 에는 당해사원은 출 석한 것으로 한다.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 하여는 의사록을 작 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 된 사무소에 비치하 여야 한다.			
제77조(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p>달성 또는 달성의 불 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 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p> <p>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p>			
<p>제78조(사단법인의 해 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 상의 동의를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 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 에는 그 규정에 의한 다.</p>			
<p>제79조(파산신청) 법 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 사는 지체없이 파산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80조(잔여재산의 귀 속)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 정한 자에게 귀속 한다.</p> <p>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 를 지정하지 아니하 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 적을 위하여 그 재산 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 의가 있어야 한다.</p> <p>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 한다.</p>	<p><u>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u>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 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 여하거나 무상대부 (無償貸付)한다.</p>	<p><u>제25조(잔여재산의 귀 속)</u> ① 공익법인은 그 정관에 당해 공익 법인이 해산한 경우 에 <u>법 제13조</u>의 규 정에 의하여 잔여재 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 명시하여야 한다.</p> <p>② 공익법인의 청산인은 해산후 <u>민법 제94조</u> 의 규정에 의한 신고 와 함께 잔여재산이 귀속할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에 잔여재 산의 목록을 제출하 고, 지체없이 권리 이 전절차를 취한 후 재 산을 인도하여야 한 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한 재산은 주무관청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 관청이 교육부장관인</p>	<p>제 14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신청) 법인의 이 사 또는 청산인이 <u>민 법 제80조제2항</u>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 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에는 <u>별지 제6호 서 식</u>의 잔여재산처분허 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u>법무부장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산당시의 정관 1 부 2. 총회 회의록(사단법 인의 경우에 한한다) 사본 1부

		<p>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하되,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하거나 무상대부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5조(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			

<p>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p> <p>② 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p>			
<p>제86조(해산신고)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p>			<p>제13조(해산신고) ①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산연월일 2. 해산사유 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p>② 제1항의 법인해산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삭제 5. 해산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p>③ 법인해산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p>

			<p>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p>
<p>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p>			
<p>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p>			
<p>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 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p>			

제외하지 못한다.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①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3조(청산중의 파산) ①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p>③ 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p>			
<p>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5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청산을 종결하고 그 취지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p>
<p>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p>			
<p>제96조(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p>			
<p>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 	<p>제19조(벌칙) ① 제4조 제3항이나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4.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p>산선고의 신청을 해 태한 때</p> <p>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p>	<p>③ 이사나 감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공익법인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와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5조(조세 감면 등) 공익법인에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p>		
	<p>제18조(권한의 위임) 주무 관청은 이 법에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급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p>		
		<p>제20조(재산관리) 공익법인은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p>	
		<p>제21조(예산편성요강) ① 공익법인의 예산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및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p>	

		<p>부속명세서로 편성한 다.</p> <p>② 제1항의 추정대차대 조표는 당해 연도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 정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 야 한다.</p> <p>③ 제1항의 추정손익계 산서에는 당해 연도 에 발행할 것으로 추 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되, 전 년도의 수익과 비용 을 비교·표시하여야 한다.</p> <p>④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의 부 속명세서에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 백히 하여야 한다.</p>	
		<p><u>제22조(회계원칙)</u> ① 공익법인의 회계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사업의 경 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 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 다.</p> <p>② 공익법인의 회계조 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p>	
		<p><u>제23조(회계의 구분)</u> ① 공익법인의 회계 는 법인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 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 다)로 구분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법 인세법의 규정에 의</p>	

		<p>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p> <p>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p>	
		<p><u>제24조(재산의 평가)</u> 공익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p>	
		<p><u>제28조(준용)</u>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되, 따로 정한 사항이 없는 때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익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